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4권 제2호(통권 제134호)

2023 · 여름호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는 형사정책분야에 관한 논문, 서평, 번역 등을 수록하는 학술지입니다.

본지의 발간목적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유로운 발표의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북돋우고 형사정책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논문의 의견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34호, 2023·여름호)

[특별논문]

스토킹처벌법 정부(법무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쟁점과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 ▶ 조제성 1

[연구논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84)을 기초로

- ▶ 이승준 21

스토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에 따른 심리적 유형분류 및 성격특성의 이해:

성차별의식과 MMPI-2를 중심으로

- ▶ 이혜지·이수정 55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 쟁점과 과제

- ▶ 김남규·박다윤·노희주·김도선·김연수 87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34, NO. 2 (June, 2023)

[Special Article]

A Study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Passage of the Government
(Ministry of Justic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 Cho, Je Seong 19

[Article]

How to Improv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 Lee, Seungjun 5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sychological Types Related to Distorted
Perception of Stalking Offenders and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Sexism and MMPI-2

▶ Hye Ji Lee · Soo Jung Lee 85

A Study on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s for Tracking
the Stalker Location

▶ Kim, Namgyu · Park, Dayoon · Noh, Heejoo · Kim, Dosun ·
Kim, Yeonsoo 117

스토킹처벌법 정부(법무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쟁점과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조 제 성**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톱킹처벌법)이 정부(법무부) 개정안으로 통과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킹처벌법의 정부(법무부) 개정안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델파이조사 결과 개정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전자감독제 시행에 대해 의견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이후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톱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스톱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요인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델파이조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2가지 키워드(반의사불벌죄, 전자감독)가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스톱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처벌을 권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경력(오래될수록), 업무가중, 소극적인 피해자 대상 업무처리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델설명력 43.6%로 결과에 따른 인력 재배치 검토, 업무개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소극적인 피해자의 신고기피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을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6.30.2.1>.

❖ 주제어 : 스톱킹 전담 경찰관, 소극적 스톱킹 피해자, 업무개선, 반의사불벌죄, 델파이조사

* 이 연구는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스톱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스톱킹 행위에 대한 범위와 스톱킹 범죄에 대한 기준 등 여러 개선에 대해 쟁점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스톱킹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 개정안은 2023년 7월 11일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이전의 스톱킹처벌법은 1) 과태료 벌칙 규정에 대한 부적합성, 2) 안전조치 중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불이행시 형사처벌 규정 제한, 3) 긴급응급조치 변경, 취소 및 기각의 경우 스톱킹 행위의 상대방, 법정대리인 및 담당 경찰관에게 통지규정 마련, 4) 스톱킹 피해자를 위한 국선번호인 선임 특례의 필요성, 5)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었다(조제성·이선행·임정재, 2022: 195). 개정된 법안은 앞서 언급된 이전 스톱킹처벌법의 맹점을 잘 보완하고 있었다. 개정 내용이 현장 경찰과 학계 등 현장과 전문가의 합의된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추가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 마당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있어서 불필요 혹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상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고 싶다.

올해 7월 시행된 스톱킹처벌법 개정 법률은 스톱킹을 반의사불벌죄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스톱킹 범죄로 신고를 하게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당연한 처사 혹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스톱킹 범죄의 90% 이상이 관계기반 스톱킹이라는 점이다(조제성 외, 2022: 160). 이는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스톱킹 행위 또는 스톱킹 범죄를 하는 주체는 전 남자친구 혹은 전 남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직장 동료나 아는 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기반 스톱킹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소극적인 피해자의 입장

에서는 신고를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된다. 전 남편, 전 연인 혹은 아는 지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부담감에서부터 관계기반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처벌보다 상황의 개선을 더 원하기 때문에 신고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조제성 외, 2022: 197). 이러한 상황은 사건 자체가 또 다른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토킹을 그대로 두게되어 배회 또는 감시형에서 점진형의 양상이 될 경우 살인, 성범죄 등의 사전 징후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Mullen et. al., 1999; 강소영·김한솔, 2021: 178 재인용).

이미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기에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사전에 대응되어야 하는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현장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타 업무의 특성과 다르게 피해자와 라포형성을 통해 또 다른 심각한 범죄로 발전되기 전 상황을 포착하고 적절한 안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기술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계기반 스토킹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면 주의해 보아야 할 점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전 폭력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이 유·무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발전되는데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Bonta. J., Law. M. & Hansom. K., 2003: 1372-1379). 이러한 부분은 스토킹전담경찰의 콜백 및 모니터링 상황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개선을 통한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관련해 국내 연구에서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스토킹으로 판단된 행위 특성을 스토킹 목적, 구체적인 행위, 스토킹 행위자의 반성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강소영, 2022: 55-84). 이는 스토킹전담경찰관과 피해자 사이 라포형성을 통해 기록에 없는 내용을 수집할 필요성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선 논의에 근거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상황에서 관계기반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까지 매우 망설일 수 있다는 특성과 그에 따른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사건처

리에 소극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개선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다. 관련해 주요 요인으로 1) 인력배치에 대한 고민, 2) 업무부담의 해소에 대한 고민, 3) 스토킹전담업무의 적합성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무개선 관련 정책제언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계기반 스토킹과 처벌불원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은 전자감독, 구성요건 상 적용 한계(충간소음, 주차분쟁, 불법 추심 등)에 대한 논의¹⁾ 등 아직까지 많은 이견이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대응되어야 할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어떠한 이유로 귀결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반 스토킹의 경우 처벌불원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개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기반 스토킹 상황에서 신고가 더 어려워지게 된 피해자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최근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90% 이상 아는 사이였고, 이 중 과거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혀졌다(김잔디, 2022: 51). 하지만 이러한 국내 정서와 실태가 반영된 스토킹 처리 절차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첫 시행 이후에도 없었다(이현정, 2021: 271). 더욱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더욱 그 필요성에 대해 간과할 것에 대해 우려된다. 특히, 국내 정서에 맞게 사건이 경미하다고 느끼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할 때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이규호·김정동, 2022: 40). 해외에서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더욱더 입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시점인 지금 더욱더 스토킹전담경찰관

1)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전, 강소영·이완희(2021)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대해 충간소음 등에 대한 내용을 예로 들어 긴급성 또는 보충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제언함

및 관련 부서의 경찰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해외에서는 스톱킹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죄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지와 이전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또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NPCC & CPS, 2018; 강지은·김성현·이수정, 2021: 116 재인용). 세심한 관심의 요구는 또다시 업무의 가중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때문에 업무의 개선에 업무가중을 감소시키고 이와 별개로 스톱킹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콜백 및 모니터링이 개인에게 적합한 업무인지 역시 확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업무개선은 스톱킹 사건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모를 스톱킹에 의한 심각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보복의 두려움과 처벌불원

가. 범죄피해 대응 의지와 두려움

우리나라 스톱킹은 매우 높은 비율로 관계기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관계기반을 전 연인 또는 전 남편에 국한 시키더라도 그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²⁾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청년 및 중장년을 모두 포함해 전 연인에 의한 스톱킹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장(스토킹전담경찰)의 경험에 근거한 비율이 48.9%에 달했다(조제성 외, 2022: 160). 이는 특히나 1인 가구와도 연결 지어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부분으로 20대에서 30대의 1인 가구가 관계기반 스톱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1인 가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범죄두려움과도 관련 있다. 범죄두려움은 피해자학을 포함한 모든 범죄두려움 주제의 연구³⁾를 살펴보았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김연수, 2022: 64-65). 특히,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에서는 범죄피해의 위험성에 대해 미시수준의 범죄두려움 그리고 거시수준의 요인이

2) 조제성과 연구팀이 스톱킹전담경찰관 대상 경험 및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 연인 또는 전 남편의 스톱킹 비율을 64.8%로 보고하였다(조제성 외, 2022: 160).

3) 해당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이론적 논의는 범죄피해모형, 취약성모형, 무질서 모형, 이웃통합모형 등이다.

인지되면 위험성이 자극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스토킹 범죄보다 아는 지인 혹은 전 연인의 스토킹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시적, 미시적 수준의 범죄두려움이 낮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해석⁴⁾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범죄두려움의 해석수준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고찰⁵⁾이 요구되고 이는 스토킹 사건의 처리에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개인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위험인식이다(김연수, 2022: 64). 때문에 발생확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젊은 여성 1인 가구라면 스토킹에 대해 덜 위험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논거가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묻는다면,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현장 경찰에서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에서 소극적인 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우려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놓칠 수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도 스토킹전담경찰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민감성이 더 강조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대응의 차원에서 업무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나. 보복 및 재범과 처벌불원

개정 이전의 스토킹 신고에 대한 112 신고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형사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기반 스토킹과 재신고 여부였다(한민정, 2021: 55). 이는 스토킹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건 자체로서 접근하기보다 과거 이력과 행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관계기반 스토킹과 보복 및 재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전 처벌불원의 매커니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또는 법정 불출석의 이유가 보복

4) 이 경우에서 전 연인이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있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은 배제된 상태의 주관적 판단을 기술한 것이다.

5)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로 피해자(특히, 20-30의 젊은 여성 1인 가구)의 현재 상황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혹은 위험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지 경찰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Buzawa. E. S., & Buzawa. C. G., 1996: 87).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관계기반 스토킹과 보복 및 재범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실증하기도 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자 체포보다 문제행동에 대한 중지 또는 경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Mastrofski. S. D., Snipes. J. B., & Supina. A. E., 1996: 269). 다른 유형의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관계기반에서 충분히 행위자의 처벌보다 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 처벌보다 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연인 등 관계성에 의한 연민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보복과 재범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정에 대해 관계기반 범죄에 대해서 스토킹을 명확히 명시하며 주거가 특정됨에 따른 두려움이나 범행전력에 의한 재범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자신의 주거지가 노출(관계기반인 경우 그러한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된 상태에서 그리고 가족이나 여러 정보가 이미 과거 공유된 상황에서 보복과 재범으로 인한 적극적인 처벌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황정용, 2022: 344-345).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보복우려 및 재범에 대한 판단⁶⁾에 신중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물리적 시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특히, 이 연구에서는 소극적인 피해자에 대한 신고 권유)를 위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업무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보복우려 등 현장 사정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재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황정용, 2022: 346).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2년 수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스토킹전담경찰관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결측치를 제외하고 89건의 응답 데이터를 최종 활용했다. 당시 경찰청에서 발표된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전국 279명으로 전체 모집단의 32.62%가 표집된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본문에 인용된 델파이조사 결과물은 현장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법률, 스토킹,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 스토킹의 특성 등 포괄적인 부분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시켰다. 1차 개방형 질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의견을 재구성하여 2차 선다형 질문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한 결과이다.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전자감독제 시행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처벌불원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의지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 분석방법

활용된 데이터에서 종속변수로 피해자가 처벌을 망설일 경우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한계를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했다. 즉,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처벌을 망설이는 상황에 대해 대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처벌 권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한 것이다. 이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스토킹 전담 경찰의 업무에 대한 업무가중 그리고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느끼는지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변수의 정규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으며, 변수의 공분산 확인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VIF 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회귀분석에 적합한 변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종적으로 처벌불원 시 스톱킹전담경찰관이 처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 IBM SPSS Statistics 26.0을 활용했다.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한계가 있다(5점척도)”로 스톱킹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른 스톱킹 전담 경찰관의 처벌 권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변수를 활용한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는 1) 우리나라 스톱킹의 경우 90% 이상⁷⁾이 관계기반 스톱킹이라는 점, 2) 소극적인 피해자의 경우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처벌하게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즉, 관계기반 스톱킹인 경우 전 애인, 전 남편을 신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특성(소극적인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제성 외, 2022: 19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톱킹전담경찰관의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를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처음 연구가 설계되고 조작적 정의되는 과정에서 업무기중, 심리적 부담,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을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심리적 부담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5점 척도)” 문항이 업무로 인한 부담감인지 혹은 안전조치가 아닌 보호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업무 불수용성에 대한 부담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최종적으로 업무기중과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 2개 변수로 분석을 실시했다.

7) 스톱킹 전담 경찰관 대상 경험 및 인식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톱킹 행위자는 전 연인(48.9%), 지인(28.1%), 전 배우자(15.9%)로 포괄적인 의미로 지인을 관계기반 스톱킹에 포함한다면 93.9%가 관계기반 스톱킹이 된다(조제성 외, 2022: 9).

업무가중의 경우 “다른 업무가 과중되어 보호 및 지원 업무에 열심을 다 하기 어렵다(5점척도)”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피해자의 말을 모두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다(5점척도)”를 합산 후 평균을 내 활용했으며,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은 “스토킹 피해자가 소극적이어서 업무처리가 어렵다(5점척도)” 문항을 변수로 활용했다. 업무가중과 고객(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에 영향을 준다(조정의·주성빈, 2018: 264-265).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2개 문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처벌 권유의 적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 통제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별, 연령, 경제수준등을 다루기보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라는 특성이 통제될 수 있도록 성별, 겸업여부, 경찰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별은 여성을 준거집단으로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처벌 권유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겸업 여부 역시 준거집단을 겸업(부)로 정해 겸업 상태에서 처벌 권유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경력의 경우 과거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온정주의로 받아들여졌던 과거 인식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3가지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주요 변수인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이 처벌 권유의 적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3. 연구가설 및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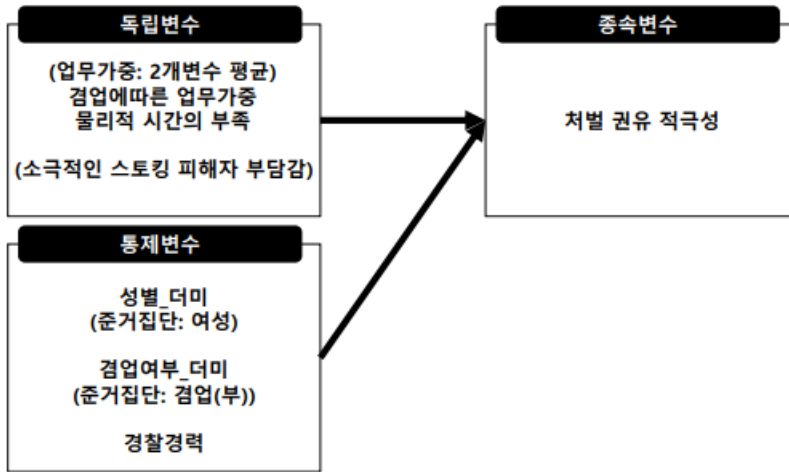
연구모형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에 기반해 몇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 가설 1. 남성인 경우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 가설 2. 겸업 상태인 경우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 가설 3. 경찰경력이 많을수록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 가설 4. 업무가 가중될수록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5.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통제변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그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이하나 논문의 저자로서 스톱킹 전담 경찰관을 현장에서 밀접하게 관찰한 결과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이 적극적이고 또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히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다. 또한 겸업여부는 업무의 가중과는 다른 것으로 겸업 자체가 업무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이 연구설계에서는 겸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권유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빈도분석

이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3.8%, 여성이 46.2%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겸업의 경우 83.5%가 겸업중이라고 응답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스톡킹 전담 경찰관이 겸업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의 경력은 3년 이하 25.3%,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 23.1%, 7년 이상에서 13년 미만이 26.4%, 13년 이상이 24.2%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N	%
성별	남성	49	53.8
	여성	42	46.2
겸업 여부	겸업(부)	15	16.5
	겸업(여)	76	83.5
경찰 경력	3년 이하	23	25.3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	21	23.1
	7년 이상에서 13년 미만	24	26.4
	13년 이상	22	24.2

나. 주요변수 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연구의 독립변수(업무가중, 소극적인 스톡킹 피해자 부담감)와 종속변수(처벌 권유 적극성)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왜도(-.516 ~ -1.161)와 첨도(.129 ~ 3.130)가 절대값 기준 정규성을 가정하는 범위의 계수⁸⁾로 나타났다(서원진·이수민·김미리혜·김재중, 2018:

8)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왜도와 첨도의 통계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계수의 절대값이 왜도의 경우 2 이하 첨도의 경우 7 이하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본다.

178).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업무가중	3.84	.829	-.520	.293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 부담감	3.82	.889	-.516	.129
종속변수	처벌 권유 적극성	4.26	.728	-1.161	3.130

독립변수로 활용된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통해 계수가 0.6 이상의 계수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절대값 기준 .016에서 .338 사이의 계수로 나타나 공분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1	1				
2	-.075**	1			
3	-.234**	.016***	1		
4	-.044***	-.072**	-.073**	1	
5	.065***	-.178**	.047***	-.338**	1

1 : 경찰경력

2 : 검업여부

3 : 성별

4 : 업무가중

5 :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 부담감

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처벌 권유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찰경력, 업무가중,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 부담감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자면,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한계가 있다(5점척도)”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혹시 모를 상황(관계기반 스톱킹의 경우 처벌을 꺼려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성의 한계에 대한 부분이다. 즉,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경찰의 스톱

킹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제시한 바 이에 대해 처벌에 대한 권유에 한계가 있다고 느낀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업무개선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3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경찰의 경력이 오래되었을수록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권유에 대한 한계가 감소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중에 대해서는 겹겹, 물리적 시간 부족 등이 합산되어 평균을 낸 변수로 업무가 가중될수록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처벌을 권유하는데 한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 부담감은 말 그대로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부담감이 높을수록 처벌을 권유하는데 한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콜백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했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처리에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 한계를 갖도록 하는 요인은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업무의 가중을 해소하고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와의 라포형성 등 콜백 및 모니터링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모를 사건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다. 해당 결과는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4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스토킹 처벌 권유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구분	B	S.E.	t	VIF
(상수)	2,090	,348	6,002	
성별_더미	,019	,119	,158	1,067
겹겹_더미	,145	,159	,913	1,059
경찰경력	-,148	,053	-2,769**	1,071
업무가중	,253	,075	3,368***	1,159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 부담감	,375	,071	5,319***	1,188
F	29,233***			
R ²	,468			
수정된 R ²	,436			

9) 해당 분석결과는 다른 연구모형을 통해 다시 분석해봐야 할 부분으로 경험에 따른 권유 부담감 감소 등 후속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V. 결 론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정부(법무부)의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그 필요성과 국민의 정서가 잘 반영되었다고 감히 평가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1) 처벌불원에 의해 협박, 합의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2) 사건처리 중간 처벌불원 시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일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3)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한 피해자의 합의 유도 사례가 발견된다는 우려, 4)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스톱킹에 대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처 사건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대상자, 소극적인 성향으로 사건의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상자, 특히, 관계기반 스톱킹 상황에서 두려움과 재범 또는 보복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이지 않거나 상황의 개선만 요구하는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느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경찰(특히, 스톱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을 강조하고자 했다. 최근 연구에서 업무개선이 피해자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업무처리에 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이고 질적인 방법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제성 외, 2022: 60).

연구결과 스톱킹 사건 처리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 한계를 느끼도록 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방법들로 해소되거나 보완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른 3가지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1) 인력배치에 대한 고민, 2) 업무부담의 해소에 대한 고민, 3) 스톱킹전담업무의 적합성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인력배치와 스톱킹전담업무의 적합성 파악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스톱킹전담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업무에 몰입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이미 배치된 경찰 대상의 자기분석이 될 것이다. 자기분석을 통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콜백 및 모니터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스토킹전담경찰관 대상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성별에 대해 그 차이¹⁰⁾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조제성 외, 2022: 181). 때문에 실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업무부담의 해소에 대한 부분은 인력의 충원이라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문직제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경찰 내 전문직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스토킹 사건의 처리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라포형성과 상담 및 심리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콜백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직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콜백 및 모니터링을 하나의 상담으로 인식함에 따라 업무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거부감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적절한 인력 배치와 함께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가는 전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아주 협의적인 연구 문제로 시작되었다. 연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경찰(특히,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이 결국 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조치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업무개선과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극히 일부의 비율일 수 있겠으나 소극적인 피해자, 관계기반 피해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범죄피해에 대해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 역시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야 사건 처리에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작은 담론으로 취급하기보다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되길 희망한다.

10) 조제성 외(2022) 연구팀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역할과 피해자 지원 상담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더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소영. (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톱킹범죄의 특성과 진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 55-84.
- 강소영·김한솔. (2021).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톱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160-185.
- 강소영·이완희. (2021).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 『한국경찰학회보』 23(6): 250-276.
- 김연수. (2022). “범죄두려움의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 연구 - 위협해석모델의 확장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1(2): 59-66.
- 김잔디. (2022). “스토킹처벌법상 스톱킹범죄의 성립요건 - ‘반복’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4(1): 45-70.
- 강지은·김성현·이수정. (2021).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2): 97-128.
- 서원진·이수민·김미리혜·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이규호·김경동. (2022). “스토킹범죄와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사법행정』 63(4): 39-48.
- 이현정.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4): 265-284.
- 조정익·주성빈. (2018). “델파이(Delphi) 방법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업무과중화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5(3): 253-276.
- 조제성·이선형·임정재·고가영·이근호. (2022).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민경. (2021).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33(1): 39-65.
- 황정용. (2022). “현행법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4): 333-354.

[국외문헌]

- Bonta, J., Law, M. & Hanson, K.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23-142.
- Buzawa, E. S., & Buzawa, C. G. (1996), *Domestic Violence: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2nd ed.). Sage.
- Ferraro, Kenneth.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astrofski, S. D., Snipes, J. B. & Supina, A. E. (1996), Compliance on Demand: The Public's Response to Specific Police Reques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3), 269-305.
- Mullen, P. E., Purcell, R., & Stuart, G. W. (1999).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8): 1244-1249.
- West, S., Finch, J., & Curran, P.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A Study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Passage of the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Cho, Je Seong**

This study addresses issues regarding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need to be considered once again even though the it has been passed as a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reflected the practical problems very well, the Delphi survey of the field and experts show that there are area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Delphi surve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nsensus on the abolition of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o even after the amendment, complementary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additional supplementation in order fo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to be carried out well. Therefore,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required for bette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and to provide relevant recommendations so that each factor can be reflected in real worl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two key words(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were not agreed upon in the

* This study utilizes data collected in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 2022.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First author)

Delphi surve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 handling of stalking crimes and victim support with safety measures, limited to improving the work of stalking police officer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recommending punishment to unpunished victims were police experience (the longer the police career), heavy workload, and difficulty in dealing with passive victims. This result, with a model explanatory power of 43.6%, suggests that the police should consider reassigning personnel, work improvement, and an alternative to the avoidance of reporting of passive stalking victim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Implications and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 Key words: Stalking Police Officers, Passive Stalking Victims, Work Improvement,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Delphi survey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84)을 기초로

이 승 준**

국 | 문 | 요 | 약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은 스톱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스톱킹의 경우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정폭력처럼 보다 기민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됨을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톱킹처벌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스톱킹 처벌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실체법적, 절차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스톱킹처벌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스톱킹범죄의 양상과 속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즉응적 대처가 비록 회고적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불안 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우선 현행 스톱킹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처벌의 공백지대가 크다는 점, 피해자보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 2차 가해, 강력범죄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톱킹범죄의 대상 및 개념의 확대, 가중적 구성요건의 신설, 긴급응급조치불이행죄의 신설, 온라인스토킹 규제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부작용 최소화, 피해자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최근 통과된 일부개정안을 보면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들이 보인다. 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어야만 스톱킹처벌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안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동료에 의한 스톱킹 방지 대책과 미국의 스톱킹 자원센터(Stalking Resource Center), 스톱킹 예방센터(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와 같은 종합적 지원시설의 벤치마킹

* 본 논문의 제출 이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의 토론 수작으로 논문의 주요내용이 학술대회 토론에 활용되었음을 밝힙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등은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6.30.2.21>.

❖ 주제어 : 스톱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2차 가해, 스톱킹범죄 확대,
긴급응급조치불이행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I. 문제의 제기

주지하다시피 각계각층의 오랜 숙원이었던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약함)이 2021. 4. 20. 제정되고 2021. 10. 21.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제정 당시부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을 통해 그 치명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스톱킹에 이은 가해자의 2차 범죄 가능성을 노출하였으며,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스톱킹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성공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함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스톱킹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특성상 스톱킹범죄의 정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구성요건을 피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 직장동료를 스톱킹하다 살해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겪으면서 법무부는 스톱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스톱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스톱킹 실태조사·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스톱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스톱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규정한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2. 12. 27. 국회를 통과하였다.

스토킹범죄는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법률안이 발의된 후 20여 년 만에 스톱킹처벌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지적되었듯이, 단순히 스톱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간, 살인 등 제2의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20여 년의 노력에 힘입어 비록 스톱킹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그 사회적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정의 방향에 대한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스톱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 3,039명 가운데 기소된 인원이 1,912명이며(64.1%), 불기소된 인원은 1,120명(36.9%)에 달했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비율도 2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스톱킹처벌법의 처벌의 공백지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2022. 9.), 송파구 세 모녀 살인사건(2021.

1) 경찰청,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2022, 149면. 다만 특이한 점은 평균 구속률은 4.2%로 전체 범죄 대비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2021. 11.)은 피해자 보호에 무력한 스토킹 처벌 법제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정치권이나 정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있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지 다시금 체계적으로 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²⁾

II.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

주지하다시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처벌의 공백지대가 크다는 점, 피해자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 그 결과 피해자가 2차 범죄 또는 강력범죄로 희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처벌의 공백지대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5개 중 하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법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포괄구성요건의 부재로 인해 처벌될 수 없는 교묘한 스토킹행위 영역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문언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스토킹행위를 번갈아 가면서 시도는 등 지능적 스토킹행위에 대한 대처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피해자보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예방의 미흡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경찰의 경우’가 ‘선후배나 친구’보다 낮았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

2) 본 논문의 제출 이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논문도 애초 법무부 일부개정안(2023. 2. 15., 의안번호 2120039)을 기초로 한 검토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안을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지면 관계상 개정법률안의 모든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필자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은 이유로는 ‘경찰에 신고해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 ‘과거에 문의/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피해를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³⁾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 사후적 피해자 보호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는 잠정조치 운용상 해석의 불명확성,⁴⁾ 법원의 4호 처분(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세 번째 문제점은 2차 가해, 강력범죄로의 악화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스토킹은 과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친밀했던 관계기반 스토킹의 경우 통제행동⁵⁾이 발생하고 이후 스토킹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⁶⁾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된 특징이며,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생활을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강간,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은 살해 전 스토킹의 전조증세가 있다.⁷⁾ 스토킹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해, 살인 등의 중범죄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은 2차 가해로의 연결고리가 차단되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위해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반복하고 그 거절 과정에서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점 또한 노출되었다.

- 3) 이수정 외,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경기대, 2021. 99면에 따르면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 256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순서대로 22.3%, 15.2%, 5.1%의 비율로 나타났다.
- 4) 예컨대 논란이 되었던 상황, 검사가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도2092 결정).
- 5) SNS 점검, 옷차림 제한, 타인과의 만남 차단, 일정 통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 6)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로는 이수정 외, 앞의 보고서, 72면 이하.
- 7) 한동효/허영희,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2022, 229면.

Ⅲ.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1.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종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및 피해자보호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스토킹을 신설하는 등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내용을 정비하겠다고 공언하였다.⁸⁾ 법무부는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따라 2023. 2. 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39)을 제출하였다.

사실 법무부의 개정안 외에도 의원안으로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0747) 등 3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들 3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일부개정안이 2023. 6. 21. 통과하였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하기로 하였다(제18조 제3항 삭제). 이를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추가하기로 하였다(안 제2조 제1호 다목·바목·사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였다.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안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또한

8) 법무부, 2022.10.19.자 보도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참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7조 제5항 및 제11조 제4항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였다(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였다(안 제9조 제1항 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기본 3개월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 제7항),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신청권을 신설하였다(안 제11조 제2항). 또한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도 신설하였다(안 제17조의3 신설).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17조의4 신설).

그리고 잠정조치불이행죄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안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대응이다.

이상에서 최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대책 중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들 위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스톱킹범죄의 대상 및 개념의 확대

가. 스톱킹범죄의 대상의 확대

현행 법률은 형사처벌이 되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톱킹행위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있어 핵심은 지속성, 반복성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다.⁹⁾ 나아가 입법 초기에는 미리 예상하지 못했으나 법 시행 이후 입법의 공백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 규율을 가할지 여부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온라인 스토킹행위만 새롭게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을 뿐이다.

현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은 직접 피해자,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으로 제한된다. 이번 일부개정안도 여전히 상대방의 범위는 동일하게 파악하면서 ‘상대방등’으로 용어만 정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거인이나 가족이 아닌 친밀한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에는 현행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실태에 비춰 보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우회하면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은 동등하게 느낄 수 있는 동거인과 가족 외의 자를 공격목표로 삼는 경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출된 개정안들 중 피해자범위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법률들도 있었다. 예컨대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908)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9)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644)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생각건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스토킹행위자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화해지고

9) 최근 하급심에서는 행위가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뤄졌다는 이유로 스토킹이 부정된 바 있다(2023.6.18.자 뉴시스 “헤어지고 한 달 간격 두 번 찾아와…1심” “스토킹 아냐” 기사 참조).

지능화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스톱킹범죄로 포섭될 수 없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친밀하여 심리적 불안을 크게 초래하지만 동거인이나 가족이 아닌 경우가 바로 스톱킹범죄를 범하더라도 동 법률로 처벌받을 수 없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지대에 속한다. 따라서 동거인, 가족 외의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객체의 확장에는 신중하여야 하므로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외국 입법례로 독일 형법은 종래 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가중하고 있었는데, 2021년 개정에서 ②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야기한 경우를 중스토킹으로 가중하면서 피해자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객체로 포함시켰다.¹⁰⁾

나. 스톱킹범죄 개념의 확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형식은 스톱킹행위를 규정하고 이 중 가벌적인 스톱킹범죄를 규율하는 형식으로, 입법 초기부터 어떠한 행위를 스톱킹행위로 포섭할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입법안 또한 매우 다양했다. 그중 가장 첨예한 부분이 “그 밖에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즉 기타 조항을 규정할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팽팽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처벌의 확대가능성 등을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¹¹⁾ 기타 조항을 신설할 경우 현재의 처벌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스톱킹행위 유형이나 새로운 과학기술이 반영된 매체 내지 수단 등을 활용한 유형들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상 구성요건의 대강조차 알 수 없는 기타 조항을 구성요건화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¹²⁾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기타조항을 반드시 규정하여야만 스톱킹

10) BGBl. I 2021 S. 3513.

11) 반대입장으로는 장혜영의원 대표발의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 정부안 등이었다.

12) 같은 취지로 전지연, “스토킹처벌법상 스톱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2022, 186면. 포괄구성요건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이원상, “스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스토킹행위를 보다 촘촘히 규정한다면 규율의 공백 지대를 막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른바 기타 조항을 두고 있으면서도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하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¹³⁾

그렇다면 쟁점은 자연스레 현재 5개로 규정된 스토킹행위에 어떠한 행위를 추가할 것인가로 전환된다. 현재 규정된 5개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신변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시 예상되었던 것보다 처벌의 공백과 그로 인한 중범죄로의 악화 현상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일부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만을 추가하기로 하였다(안 제2조 제1호 바목·사목 신설).

여기서 온라인스토킹을 제외한 행위로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들 수 있다. ① 대면이나 만남, 교제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¹⁴⁾ ②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¹⁵⁾ ③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으로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용역 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로운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도입 외에도 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물건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기존 유형의 수정도 있을 수 있다.

① 행위는 현실적으로 빈발하고 있으나¹⁶⁾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강요에 이르지 못하

킹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2022, 218면.

13) 2007년 스토킹의 처벌에 관한 제23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제5호부터 제7호의 새로운 스토킹 유형을 신설하였다.

14) 일본 스토키규제법(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은 ‘면회, 교제 및 기타 의무가 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2조 제1항 제3호에 두고 있다.

15) 일본 스토키규제법은 ‘타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제2조 제1항 제2호에 두고 있다.

16) 최근 한 연구(강소영/김면기,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 :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건국대 글로벌산학협력단, 2021, 55면)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의 목적이 ‘관계요

는 행위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한 행위들의 반영이다. 면회나 교제 요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따라 다니거나 우편물 등을 송부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유형에 포섭하면 족하다는 견해¹⁷⁾도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지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포섭하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스톱킹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톱킹행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와 같이 제2조 제1호가목과 다목을 번갈아 하여 스톱킹범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롭게 포함하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② 행위는 현재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그 수단이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접 언어로서 행하는 경우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스톱킹의 직접 피해자들이 높은 심각도를 느끼는 행위유형의 반영이기도 하다.¹⁸⁾ 접근하거나 지켜서서 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주거 주변에서 항상 배회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유형에 포섭될 수 없다. ③ 행위는 현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통해 포섭할 수 있으나 물건 등의 ‘도달’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해석상 다소 논란¹⁹⁾이 있는 행위를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용역 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피해자의 계산으로 주문 등을 할 경우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서비스 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인과의 소통이 보통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²⁰⁾ 외국의 입법례 중 독일의 경우 개인정보를 오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접

구형’(교제요구: 69명, 60.5% / 면회요구: 58건, 50.9%)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스톱킹 행위가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겨졌던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17) 전지연, 앞의 논문, 183면.

18) 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경우 1~10 중 10으로 느낀다는 답변이 21.5%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스톱킹 유형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이수정 외, 앞의 보고서, 85면).

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거나 제3자를 통한 물건 등의 도달이라는 스톱킹행위 유형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제38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소위(2021년 3월 15일), 15면 이하).

20) 전지연, 앞의 논문, 185면.

촉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제238조 제1항 제3호), 오스트리아 형법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107a 제2항). 피해자 앞으로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용역 등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만으로는 물건이 도달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 앞으로 피자 100판을 주문하거나 1판을 100회 연속 주문하는 행위, 각종 방문서비스의 지속, 반복적 신청으로 확인 절차가 진행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²¹⁾ 행위자가 수사와 공판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처벌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한 범죄나 다른 범죄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작은 행위로부터 비롯된다는 스토킹의 속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꽃이나 향수와 같은 선물의 경우에는 스토킹유형으로 포섭할 수는 있겠으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²²⁾ ④ 행위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들을 통한 심리적 불안감 조성행위를 규율하려는 의도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스토킹행위이며 생활형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스토킹유형으로 포섭하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²³⁾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는 피해자 등의 집을 방문하여 초인종만 누르는 행위,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피해자를 엿보는 행위,²⁴⁾ 피해자의 집 문밖에서 소리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행위,²⁵⁾ 자살하겠다는 위협²⁶⁾ 등이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러한 행위들

21) 이러한 유형의 필요성을 느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로는 신상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2022, 203면.

22) 유사한 취지로는 전지연, 앞의 논문, 181면. 최근 하급심에서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새벽 시간에 자신이 다니는 스포츠시설 운영자인 여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5일 후 또다시 생일 축하 문자와 속옷 세트를 택배로 보낸 경우 스토킹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1>).

23) 전지연, 앞의 논문, 186면.

24) 독일은 기타조항, 그 밖의 제1호부터 제7호와 유사한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Rengi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24. Auflage, C.H.Beck, 2023 §26a Rn. 14).

25) ‘안전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엿듣는 행위를 제2조 제1호 나목에 추가하여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엿듣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는 전지연, 앞의 논문, 187면.

26) 독일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의율한다(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Kommentar*, 30. Aufl., C.H.Beck, 2019, § 238, Rn. 22). 통설은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므로

은 피해자등에 대해 직접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유형들이나 일상생활의 유지 내지 형성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심각성이 낮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 그의 친족이나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를 스톱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38조 제1항 제4호). ⑤ 행위는 최근 하급심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톱킹 행위의 해석에서 행위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음에도 부재중 전화, 수신 거부 등의 조치로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스톱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이다.²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톱킹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톱킹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²⁹⁾

이처럼 다양한 스톱킹 행위들을 추가하는 것이 애초 제정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명확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 등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출몰은 새로운 스톱킹 유형에 대한 필요를 앞당기고 있으며, 예견된 대로 스톱킹범죄의 특성이 직접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상당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³⁰⁾ 제정 당시의 비판대로 스톱킹행위의 유형화가 어렵지만, 변화된 규범현실과 국민의 법의식, 각국의 입법동향, 누적된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게 신중한 입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스토킹유형으로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

- 27) 최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톱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주거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스톱킹처벌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1 2022.9.20. 자 기사 “매일밤 옆집女 옛들은 40대男 “홍분 된다…이사 가라” 황당 요구”(<https://www.news1.kr/articles/?4807548>) 참조.
- 28) 다만 대법원은 2023. 5. 18. 부재중 전화 전화 문구가 표시된 경우 스톱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29)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822)도 동일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 30) 이수정 외, 앞의 보고서, 69면에 따르면 ‘피해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서’의 이유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

3. 가중적 구성요건의 신설

최근 사례들을 보면 교제 이후 결별하거나 교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한 경우 상해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전주 연하남 원룸 살인사건,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살인사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그러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범죄경력, 특히 폭력관련 범죄경력이 스토킹행위와 중첩되는 폭력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³¹⁾ 전과 경력이 있는 행위자는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등 접촉시도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폭력관련 범죄, 강력범죄의 우려가 크다.³²⁾

이러한 관점에서 중한 결과를 고려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해 또는 중상해,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³³⁾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이른바 특수스토킹,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각국의 입법례는 이와 달리 ‘중스토킹’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법은 종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가중하고 있었다(제238조 제2항). 그런데 2021년 개정으로 동향을 개정하여³⁴⁾ ①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야기한 경우(제1호), ②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다수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제3호), ③ 제1항 제5호의 범죄 행위(정보·데이터의 탐지 등)를 함에 있어 타인의 디지털탐지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

31) Douglas, K. S., Ogloff, J. R., & Hart, S. D., Evaluation of a Model of Violence Risk Assessment Among Forensic Psychiatric Patients, *Psychiatric Services* 54(10), p. 1376

32) 강소영/김민기, 앞의 보고서, 98면.

33) 전지연, 앞의 논문, 197면. 이러한 경우 외에도 16세 미만 자에 대한 스토킹, 6개월 이상 스토킹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신상현, 앞의 논문, 202~203면.

34) 다만 형식은 제2항을 개정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하면서, 특히 중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 호를 다시 정의하는 방식이다.

램을 사용한 경우(제4호), ④ 제1항 제5호에 따른 범죄행위를 통해 획득한 도화·모사(Abbildung)를 제1항 제6호의 범죄행위에 사용한 경우(제5호), ⑤ 제1항 제5호의 범죄행위를 통해 획득한 내용물·콘텐츠(제11조 제3항)를 제1항 제7호의 범죄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제6호), ⑥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 중스토킹으로 확대하였다.³⁵⁾

가중적 구성요건은 스톱킹범죄의 보호법익과 불법의 정도에 따라 스톱킹행위를 규범적으로 달리 판단, 규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³⁶⁾ 생활사태의 변화는 법률사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는 범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 또한 야기한다. 가중적 구성요건은 엄벌화·중형화라기 보다는 변화된 현재 우리 사회의 법감정,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리 설정된 규범적 필요 내지 대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톱킹범죄의 특성, 특히 관계기반 스톱킹의 경우 스톱킹에 이은 2차 범죄, 스톱킹에서 중범죄로의 전이 등에 있다는 점에서 스톱킹에 그치지 않고 상해나 중상해,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대상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는 스톱킹범죄의 보호법익이 생활형성의 자유라고 볼 수 있고, 친족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상해나 사망의 야기는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활 유지 형성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스톱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가중할 수 있는가이다. 오스트리아 형법은 2016.1.1.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³⁷⁾ 독일에서도 제238조 제3항에 대해 이러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³⁸⁾ 우리의 형법에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35) BGBl. I. 2021, S. 3513.

36) 아직 충분한 통계분석 등 실증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례들을 기초로 가중적 구성요건의 도입을 검토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나 판례에 대한 연구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공개한 제한된 자료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반 스톱킹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신중론이 수범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지는 의문이다.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은 오로지 증거기반의 사유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37) BGBl. I. Nr. 112/2015. S. 6.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제2항의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 시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107a).

38) Fischer, StGB, 70.Aufl., C.H.Beck, 2023, § 238 Rn. 57.

가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은 제252조 제2항(자살교사방조)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중적 구성요건과 대비될 수 있는 것이 강간치사죄일 수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원칙상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가중하는 구성요건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가중적 구성요건을 둘 경우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해 또는 중상해,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18조 제3항 개정) 외에도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방해 없는 인격적 발달을 위해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제18조 제4항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스토킹 양상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4. 긴급응급조치불이행죄의 신설

현행법은 잠정조치불이행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20조에 제9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중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와 달리 스토킹 현장에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현장상황의 긴박성을 토대로 내려지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 잠정조치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내용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동일하다.

애초에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규정한 것은 과잉범죄화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검사나 법원의 이중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장 경찰관의 성급한 판단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면서,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톱킹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안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잠정조치불이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시킨 것은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잠정조치 위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으로 보인다.

종래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스톱킹행위자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고 추가피해를 입혀 봤자 인신의 구속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없음을 노린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긴급응급조치불이행죄에 대한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다만 여기서 잠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것과 비취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타당한 것인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온라인스토킹 규제의 신설

현행 법률에는 제2조 제1호 다목에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 스톱킹행위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유형들을 보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또는 SNS 상에 유포하거나, SNS 주소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 성적 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이 연락하도록 하거나,³⁹⁾ 피해자인 것으로 사칭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비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악평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존의 제2조 제1호 다목으로 의율할 수 없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피해보다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39)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나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면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와 유사하게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피해자가 활동하는 공간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거나 그 과정에서 취득한 사진 등을 수집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행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감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우선 기존 다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조 제1호 바목과 사목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우선 바목은 상대방등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③ ① 또는 ②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즉 상대방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최근 제출되었던 여러 개정안들 중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644)도 스토킹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였으며(안 제2조 제1호),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9)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2021년 개정에서 새로운 스토킹 유형을 3가지 추가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온라인스토킹이다. 독일은 1차례의 개정 이후 IT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스토킹앱 등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에 접근하여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가장하여 사칭계정을 만들고 경멸적 발언을 하거나, 사진 등을 게시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점에 대응하여 2차 개정에 나섰다.⁴⁰⁾ 제238조 제1항 제5호는

다른 사람, 그의 친족이나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제202조a(정보·데이터탐지), 제202조b(정보·데이터피싱) 또는 제202조c의(정보·데이터탐지 및 피싱 예비) 죄를 범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제6호는 타인, 그의 친족이나 그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도화·모사(Abbildung)를 유포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여기에서의 행위는 도화를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화에는 사진, 필름 촬영뿐만 아니라 그림도 포함된다.⁴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공개의 경우도 해당된다. 제7호는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사람을 모욕하도록 만들거나 여론에서 비방하게 만드는 내용물·콘텐츠⁴²⁾를 배포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유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피해의 심각성이 예측되지 못한 범죄유형들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별 행위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해 왔다. 온라인공간이 오프라인 공간만큼 중요해지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행위의 가벌성,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부개정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촬영물, 영상물, 복제물, 사진 등으로 복잡하게 규정하지 않고⁴³⁾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들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해당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온라인공간에서 문제되고 있는 현상들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가 정보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이다. 또한 행위방법에 있어 공백이 존재한다. 즉 정보통신망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의 제공, 배포, 게시의 행위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온라인스토킹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는 법체계상

40) BT-Drucksache. 19/28679, S. 9.

41) BT-Drucksache. 19/28679, S. 12.

42) 내용물·콘텐츠는 독일 형법 제11조 제3항의 문서, 음성 및 영상매체, 파일저장장치, 도화·초상 또는 그 밖의 표현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저장 없이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43) 세부 유형을 상세히 구분한 법률안으로는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908)이 있다.

해석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등의 경우를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안의 사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사칭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칭하여 정보 또는 음성, 도화, 또는 사실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로 행위태양을 제한하여 가벌성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⁴⁴⁾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를 제한하였듯이 행위태양 또한 구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6.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부작용 최소화

제정 스톱킹처벌법은 제18조 제3항에서 스톱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 애초 법률안에는 친고죄로 규정한 안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선호된 것으로 판단된다. 스톱킹의 정의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특정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처벌도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해서 가해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⁴⁵⁾

반의사불벌죄는 1953. 9. 18. 형법 개정시 새로이 창설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덜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는데도 이를 친고죄로 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한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여 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점에서는 친고죄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⁴⁶⁾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합의 시도를 위한 가해자의 접촉, 그 과정에서의 2차 범죄, 합의

44) 온라인 타인사칭에 대해 처벌을 찬성하는 견해로는 고명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크뉴스) 및 온라인 타인 사칭을 중심으로 -”, 법제 제691호, 2020, 216면 및 신상현, 앞의 논문, 197면.

45) 2021. 3. 22. 제3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소위 제2호, 49면.

4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거부로 인한 중범죄로의 전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중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은 결정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가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폐지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⁴⁷⁾⁴⁸⁾ 2007년 오스트리아에 이어 최근 독일도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다.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자체는 피해자의 피해 전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만 스톱킹처벌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에 비춰보면 그 의미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불가피하고 생각된다. 이번 일부개정안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통과되었다(제18조 제3항 삭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폐지 후의 보완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스톱킹행위의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가 체포되거나 형사처벌을 희망하여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처럼,⁴⁹⁾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자신과 주변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클 수 있다. 처벌희망이나 처벌불원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 더욱 관심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스톱킹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으며, 스톱킹행위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대안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만 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하였다(안 제17조의3 신설). 업무담당자 공무원 등의 비밀 공개 및 누설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

47) “피해자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일정한 조치를 통하여 스톱킹행위가 단절되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피해자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는 박찬걸, “최근 제정된 스톱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21, 283면.

48) 일각에서는 채권추심, 중간소송의 경우에도 스톱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미한 스톱킹행위까지 무조건 처벌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전자의 경우 제2조의 ‘정당한 이유’를 간과한 해석이며, 후자의 경우 형사공탁, 피해자 의견진술서 등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9) 한민경,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제33권 제1호, 2021, 49면.

물에 신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7조의3 신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안 제17조의4 신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 등 피의자에 대한 공판절차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조항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 등의 결정, 의사의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형사법 체계 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나 이는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최근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되었다(공탁법 제5조의2). 과거 공탁조차 불가능했던 상황에 전향적인 변화가 생겼다. 형사공탁의 특례를 통해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의 반성과 피해전보에 대한 의미로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의할 지점은 바로 피해자의 의사이다.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권이 활용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 행사방식은 증인신문 방식으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의견 등을 증인신문방식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접촉,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가중 등에 비춰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다행히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34조의11). 법원은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안 제17조의4 신설)과 더불어 스토킹사건의 공판진행시 본 조항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공탁제의 특례 실시로 인한 금전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판진행과 양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다. 나아가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신변안전조치(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준용(안 제17조의2) 또한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⁵⁰⁾

7. 피해자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체계의 개선

현행 스톱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톱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스톱킹코드가 부여된 현장 단계부터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스톱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이와 달리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현행법은 이처럼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하고 피해자보호에 실효적인 잠정조치의 경우 검사를 경유하여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실무를 보면 잠정조치의 경우에도 며칠 만에 즉각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다시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다리는 것은 피해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실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⁵¹⁾을

50)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제17조의2만 신설되어 피해자 또는 스톱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만 도입되었으나, 이후 서술할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倍加)될 수 있다.

51) 보호조치 부과 기준을 ‘스토킹행위 성립’에서 ‘기본권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응급조치의 경우 스톱킹 행위시에, 긴급응급조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지는 견해도 있다(고명수, 앞의 논문,

초래하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원칙상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상 사법경찰관에게 접근금지 및 유치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쟁점이다. 그런데 사실 이미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승인 후 경찰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검찰의 청구나 승인 없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으로 종류의 변경이 가능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절차상의 특례법률보다 경찰에게 큰 폭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확대하였을 뿐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변경 또는 취소 신청권(안 제11조 제2항)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법상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은 2011년 7월 25일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는데,⁵²⁾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방안으로 위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기존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보다는 수사와 공판에 중점이 있었으며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좌우

107면).

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921호, 2011. 7.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조.

53) 법무부 일부개정안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개정안은 지방법원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의8 신설). 지방법원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이나, 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해 수시로 조사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안 제17조의9 신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안 제20조).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대응 이전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법원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톱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해 지적되었듯이 단순한 이행실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보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보를 넘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에 대한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⁵⁴⁾

이번 일부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안 제7조 제5항 및 제11조 제4항 신설). 스톱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톱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소·변경의 취지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스톱행위자 등에게는 취소·변경의 내용과 불복의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향후 스톱범죄 예방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결국 피해자가 사법적 개입에 의한 권리구제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 나아가 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잠정조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5일 이내’와 같이 법원의 처리기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⁵⁵⁾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스톱범죄의 특성과 2차

54)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기관에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현곤,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798면 이하).

55)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제17조 제6항), 현재 소요기간, 사건의 실체와 피해자의 보호필요성에 대한 판단기간, 제반 법령의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다. 현재 실무상 소요기간을 보면 경찰청의 샘플조사 결과, 긴급응급조치는 평균 1.9일, 잠정조치는 2.3일 소요되며 길게는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국수호,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스톱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2023, 75면).

범죄로 전이되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신속한 보호조치, 안전의 제도적 보장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이 도입될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의 내용 중 제3조 제3호의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안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미 법무부는 2022년 8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0호)을 2023년 2월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1심 판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신속한 잠정조치 외에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수신자료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즉시 제공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파악한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⁵⁶⁾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유죄 선고 전에 석방을 조건으로 GPS 감시장치를 부착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처벌의 한 형태로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개입이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결과를 미쳐 가정폭력 또는 범죄 전반의 재범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효과가 있고,⁵⁷⁾ 가정폭력 피해자의 재범 피해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우리의 경우에도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그 준수여부를 감시할 경우 재범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⁵⁹⁾

56)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훼손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자는 잠정조치 기간 중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새로이 도입된다(안 제20조).

57) Erez, Edna/Ibarra/Bales/Gur, GPS Monitoring Technologies and Domestic Violence: An Evaluation Study,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2012, p. 147.

58) 테네시주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00여 명의 가정폭력 관련 가해자에게 석방조건으로 GPS 장치를 부착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 바에 의하면 법원, 법집행기관, 지역사회 및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유기적 협업 하의 위치 감시를 통한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은 재범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ennessee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mproving Victim Safety with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Monitoring as a Condition of Release for Defendants Accused of Domestic Violence, 2020, pp.2-3).

물론 스마트워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며,⁶⁰⁾ 실제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작동불량 등으로 추가 피해를 당하거나,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적시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이 높은 상황에서⁶¹⁾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도입되는 여러 제도들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라는 잠정조치가 시행된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는 일정 정도 성과를 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촘촘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과 더불어, 긴급응급조치에서 제1호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장 판단에 따라 ‘위치확인 장치⁶²⁾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³⁾ 접근 금지조치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접근 금지조치와 위치확인 장치의 부착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⁶⁴⁾ 접근금지 조치만 내리고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경각심은 떨어지고 분노와 재범욕구는 커져 피해자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만큼 가해자의 위치확인도 필요하다.⁶⁵⁾ 위치확인 장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일정 거리 이내 접근시 정보

59) 강도사범과 살인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의 효과가 극명하다는 국내문헌도 있다(문희갑,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 93면.)

60) Tennessee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and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 2007와 같이 성범죄자에 대한 GPS 감시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로부터 재범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등 GPS 모니터링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소개한 글로는 Susan Turner/Alyssa/Jesse/James, “Does GPS improve recidivism among high risk sex offenders? Outcomes for California’s GPS pilot for high risk sex offender parolee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based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Volume 10, 2015, p. 4-6 참조.

61) 국회 권인숙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21.10.21.~22.5.까지 경찰이 신청한 486건 중 210건이 인용되어 기각률은 56.8%였다.

62) 확정 판결 이전이므로 전자발찌형태가 아니라 스마트워치형태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63) 김미에 의원 대표발의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740)은 제4조 제1항에 제3호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 장치 부착”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64)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가정폭력, 데이터 폭력 등의 가해자에게 GPS 부착명령을 내리는데 보호명령결정시 전자감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A Code § 136.2(a)(1)(G)(iv)). 테네시주의 경우 스톱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보호명령(order of protection) 위반자의 경우 석방 전에 GPS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TN Code § 40-11-150 b(6)).

65) 미국,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가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유로 한 접근금지명령

작동과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대피시간과 경찰의 출동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⁶⁷⁾ 다만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하더라도(제4조 제1항 제3호 신설), 법원의 사법심사 이전에 경찰단계에서 개인정보인 위치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치확인 장치의 노출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영장주의와의 충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장치 운용의 방법, 기간⁶⁸⁾ 등의 정밀 설계를 통해 최소침해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을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 이외에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주거권 보호조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이주권(emergency transfer) 행사 및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termination of residential lease) 행사,⁶⁹⁾ 비밀준수 의무의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조치에 대한 효과, 비용분석을 통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제공’을 넘는 주거권의 실질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위반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제도를 도입하였다(허은아,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NARS 현안분석 제24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1면).

66)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다는 점 외에 유사한 취지로는 박형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2022, 48면 및 50면.

67) 현재 경찰청 소관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법무부 소관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해자에게 스마트위치, 위치 키링 등이 제공되는 ‘양방향 전자감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부착장치에 위치 확인기능이 있는 경우 미교부), 재택감독장치, 부착장치의 3종만을 규정하고 있다. 위치확인 장치는 이러한 위치 ‘추적’의 개념과는 다소 구별된다. 따라서 위치확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치추적 장치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68) 예컨대 법원의 잠정조치가 결정되거나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될 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69) 긴급이주 및 비밀준수는 미국 연방법률 제24편 제5.200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Cal. Civil Code §1946.7)와 테네시주(Tenn. Code §66-28-205, §66-7-112)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권과 비밀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IV. 결 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은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물론 스톱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스톱킹의 경우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정폭력처럼 보다 기민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소 후발적 시각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던 독일의 경우에도 규정 제정시와 달리 새로운 스톱킹범죄 유형들이 추가되고 가중적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으며 친고죄 조항도 삭제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역사회의 협력과 법집행기관의 유기적 연계 없이는 스톱킹범죄의 악화를 막는 것은 ‘영원한 난제’가 될 수도 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스톱킹처벌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스톱킹범죄의 양상과 속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즉응적 대처가 비록 기본권 보호원칙 및 회고적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불안, 시대 법감정의 변화, 처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포섭되지 않는 스톱킹행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는 애초 법률 제정 당시 포괄구성요건의 신설을 포기한 반작용으로서 규율의 공백에 대한 입법부의 즉각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과 같이⁷⁰⁾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 검토한 실체적,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해도 상당 부분은 초기 대응단계의 중요성에 달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경찰의 초동현장에서의 실효적 스톱킹 위험성 평가, 현장대응력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빠진 직장동료에 의한 스톱킹 방지 대책과 피해자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미국의 스톱킹 자원센터(Stalking Resource Center), 스톱킹 예방센

70)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증거의 확보를 원활케 함은 물론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해 향후 공판절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터(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와 같은 종합 지원시설⁷¹⁾의 벤치마킹은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71) 2023.1.17. 제정되어 2023.7.18. 시행예정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소영/김면기,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톱킹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경찰청 연구
용역 보고서), 건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단, 2021
- 경찰청,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2022
- 고명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스북) 및 온라인 타인 사칭을 중심으로-”, 법제 제691호, 2020
- 국수호,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스톱킹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2023
- 문화갑,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
- 박찬걸, “최근 제정된 스톱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21
- 박형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2022
- 신상현, ““스토킹처벌법’상 스톱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저스티스 통권 188호, 2022
- 이수정 외, 스톱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경기대,
2021
- 이원상,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2022
- 이현곤,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가정법원, 2013
- 장응혁/정진성,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치안
정책연구 vol.35, no.1, 통권 53호, 2021
- 전지연, “스토킹처벌법상 스톱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
논총 제42권 제4호, 2022
- 한동호/허영희, “현행 스톱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2022

한민경,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제33권 제1호, 2021

허은아,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NARS 현안분석 제24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외문헌]

Adolf Schönke/Schröder, Horst, Strafgesetzbuch Kommentar, 30. Aufl., C.H.Beck, 2019

Douglas, Kevin. S./James/Stephen, Evaluation of a Model of Violence Risk Assessment Among Forensic Psychiatric Patients, Psychiatric Services 54(10), 2003

Edna Erez/Ibarra/Bales/Gur, GPS Monitoring Technologies and Domestic Violence: An Evaluation Study,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2012

Rudolf Rengi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24. Auflage, C.H.Beck, 2023

Tennessee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mproving Victim Safety with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Monitoring as a Condition of Release for Defendants Accused of Domestic Violence, 2020

Thomas Fischer, StGB, 70. Aufl., C.H.Beck, 2023

Turner Susan/Alyssa/Jesse/James, “Does GPS improve recidivism among high risk sex offenders? Outcomes for California's GPS pilot for high risk sex offender parolee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based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Volume 10, 2015

How to Improv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Lee, Seungjun*

The recent murders of a station attendant at Sindang Station etc. have exposed the ineffectiveness of Stalking Punishment Act in protecting victims. It is high time that we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talking and accept that it requires more agile and immediate respons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that have surfa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how the Act can be improved, both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By analyzing the problems with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have been identified so far, we can identify sufficient measures for improvement that reflect the attributes and aspects of stalking crimes. It is nevertheless inevitable given the gravity of the harm, the anxiety of the victims, and the concerns of the general public.

Firstly, we must acknowledg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include large gaps in punishment, ineffective victim protection, secondary victimization, and an inability to block the link to violent crimes. To address these issues, we propose expanding the scope and concept of stalking crimes, creating aggravating elements of crime, introducing cyberstalking regulations, abolishing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and minimizing side effects. Additionally, we suggest creating a new crime of failing to take emergency measures and improving the system of Urgent Ad Hoc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The recently passed amendments address many of the issues and improvements listed above. But there are still deficiencies like stalking by colleague and Stalking

*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Resource Center etc. Only when the problems with the revised amendments are resolved will the blind spots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be eliminated.

❖ Key words: Stalking Punishment Act,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Second offense, Expansion of stalking offenses, non compliance with Urgent Ad Hoc Measures, electronic monitoring

스토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에 따른 심리적 유형분류 및 성격특성의 이해: 성차별의식과 MMPI-2를 중심으로

이혜지* · 이수정**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다양한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는 스톱킹 범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심리학적 이론과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스톱킹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연구된 스톱킹 범죄자의 유형분류를 확인하고 심리적 특성에 따라 국내 스톱킹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MMPI-2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스톱킹 범죄자 79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별(통념), 반사회성(충동성), 조종(경계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결과를 분석하여 성차별(통념) 유형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관찰되었으며,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에서는 행동통제력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집착적 사고, 그리고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톱킹의 다양한 범죄양상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고, 각 유형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6.30.2.55>.

❖ 주제어 : 스톱킹, 왜곡된 인식, 심리적 유형, 성격특성, MMPI-2

* 제 1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I. 서론

스토킹 범죄는 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항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졌으나,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행위와 범죄로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스토킹 행위는 가. ~ 마.목까지 구체적으로 행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스토킹 범죄는 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는 단 건으로 보았을 때, 행위 자체가 공격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위협적인 행위도 지속적이고 반복성이 부여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행위 자체에 대한 가해성을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행동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범죄자에게도 심리적으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자체에 범행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자가 스토킹 행위 자체에 목적이냐 욕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얻게되는 피해자의 행동 및 관계 변화 등 도구적 수단으로 나타나는 범죄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Spence-Diehl, 1999). 이러한 행태는 스토킹 범죄가 범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범죄로 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강력범죄의 전조단계로 스토킹 범죄를 언급하고 있다(Mohandie, Meloy, McGowan, & Williams, 2006; Mullen & Pathé, 1994).

국내에서 연구한 스토킹 분석에 따르면, 피해 대상은 면식뿐만 아니라 비면식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성(性)적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등 다양한 피해자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소영, 2022; 김잔다, 2015; 한민정, 2021).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 이웃 간 층간소음, 지인 간 채무관계, 연인의 내연관계 등 다양한 장면에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소영, 2022; 김잔다, 2015).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피해대상과 범행 목적에 따라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

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폭탄 문자를 보내는 것과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을 꿈꾸며 주변을 배회하고 수 백통의 구애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톱킹 처벌법의 대상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범죄양상에 나타나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스톱킹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톱킹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톱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진화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스톱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스톱킹 범죄특성과 가해자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그리고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유사한 형태로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성격특성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특성에 따른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강력범죄로의 진화가능성을 예견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톱킹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가. 심리학적 이론에 따른 접근

Stets와 Burke는 정체성 통제이론(Identity Control Theory; ICT)을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제와 공격성에 대한 모델을 제안했다(Stets & Burke, 2005). 정체성 통제이론(Identify Control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자 사고하며 행동한다고 주장한다(Stryker & Burke 2000; Swann, 1990).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Cast & Burke, 2002; Turner, 1987). 그러나 자기정체성에 따라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등 정체성 입증(Identity Verification)을 실패하게 됐을 때 자기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거나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Cast & Burke,

2002).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해 보상받고자 한다(Stets, 1995). 또는 불일치 정보를 무시하거나 환상을 갖는 등 왜곡된 인식으로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나타난다(De La Ronde & Swann, 1998; Pintel & Swann, 2000). 즉,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거나 정체성 재확립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체성 통제이론(ICT)에 따라 스토킹 범죄행동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등 정체성 입증에 실패하게 됐을 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되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강화되는 것을 대입해 볼 수 있다. 가해자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개념이 약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기개념의 안정성을 느끼고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아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친밀한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자 하면서도, 행동을 통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표시하여도 거부의를 잘못 해석하거나 무시한다. 이것은 자기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해 보상받고자 계속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것이 가해자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립과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스토킹이 쉽게 반복되고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따라 통제가 강화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이 실패하거나, 정체성에 따른 상황통제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가 점차적으로 공격적인 양상을 띄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스토킹에서 공격성이 표출되고 나면 정체성 붕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할 것이며, 통제력 상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피해자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스토킹 범죄에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기만 또는 통제의 특성은 심리적, 신체적 학대의 점진적 심각성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을 살펴볼 수 있다. 성인의 애착 유형이론은 Bowlby(1969)와

Ainsworth 외 연구진(1978)의 이론을 확장한 개념으로, 그 중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이 스톱킹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artholomew, Henderson, & Dutton, 2012; Bartholomew & Horowitz, 1991; Davis, Ace, & Andra, 2000; Hazan & Shaver, 1987; Patton, Nobles, & Fox, 2010). 불안정 애착유형은(Insecurely attached) 대인관계에서 대립적이고 두려워하며 냉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서 집착형(또는 몰두형) 애착유형(Preoccupied attached)이 스톱킹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Holtzworth-Munroe, Stuart, & Hutchinson, 1997; Miller, 2012; Spitzberg & Cupach, 2007). 집착형 애착유형(Preoccupied attached)은 자기혐오와 자신의 무가치성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의지함으로써 공허함을 채우고자 한다. 그러나 내면으로부터 자리잡은 자기부정에 대한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충족될 수 없으며, 관계단절이 나타났을 때 강한 분노를 경험하는 등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Miller, 2012). 집착형 애착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체성불안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부재는 정체성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더 매몰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Patton 외 연구진(2010)은 2,78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톱킹 가해경험, Brennan 외 연구진(1998)의 성인 애착유형,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태도, 정서 등 개인적 심리특성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안정 애착유형(insecure attachment)에서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이 관찰될 경우 스톱킹 가해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Patton et al., 2010). 불안정 성인애착은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로 구분하였는데, 애착불안은 거부와 관계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몰두하는 등 과잉활성화(hyperactivation) 전략을 사용하고, 애착회피는 관계요구 자체를 부정하며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등 비활성화(deactivation)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Mikulincer & Shaver, 2009). 즉, 애착불안은 스톱킹 행위가 과잉활성화 전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집착,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심취하여 나타난 결과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은 잘못된 방어기제 사용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 고려해 볼 수 있다. Meloy(1998)는 스토킹을 약탈적인 폭력(predatory violence)과 다르게 정서적 표출로 인한 폭력(Affective violence)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정서적 폭력은 분노 또는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거부로 인한 자기존재의 위협으로부터 회피하고자 나타나는 폭력으로 설명하였다(Meloy, 1998; Mirsky & Siegel, 1994). 이는 스토킹에서 나타나는 폭력행위가 직접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가하거나, 극단적인 형태의 공격행위보다는 주로 밀치거나, 먹살을 잡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등 간접적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Meloy, 1998). 물론 약탈적인 폭력성도 나타나지만, 정신병리적 특성과 관련성이 낮다면 정서적 표출의 폭력성의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Serin, 1991; Williamson, Hare, & Wong, 1987).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들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 슬픔, 분노에 대한 방어기제로 피해자를 이상화(Idealization)하거나 투사(Projection)하기도 하고, 치환적 태도(Displacement)를 보이기도 한다(Kernberg, 1984; 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Skoler, 1998). Kernberg(1984)는 동경하는 피해자에 대한 환상이 방해받을 때 원초적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상화(Idealization)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koler(1998)는 피해자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좌절되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 대한 분노표출을 투사(Projection)로 설명하였다. Meloy(1998)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피해자와 강한 연결이 되어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질투나 보복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는 치환적 태도(Displacement)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스토킹은 가해자의 분노, 좌절, 질투 등 부정적 감정의 잘못된 해석 및 표출과 강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Brennan & Shaver, 1995; Davis et al., 2000),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왜곡된 인식에 따른 접근

정신장애가 없는 스토킹 범죄자들은 상황판단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지 신호를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등 상황판단의 부적절한 인식은 잘못된 통념이나 비합리적 신념 또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사고와 관련이 될 수 있다(Dunlap, 2010; Meloy, 1998). 먼저 잘못된 통념은 선입견적 고정관념, 구시대적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스톱킹 범죄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통념은 성차별적 인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서는 Dunlap 외 연구진(2015)의 스톱킹 통념 수용도(Stalking Myth Acceptance; SMA) 척도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여 스톱킹 통념 척도를 사용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스톱킹 통념이 높을수록 스톱킹에 대한 범죄인식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unlap, Lynch, Jewell, Wasarhaley, & Golding, 2015; 이동길, 2015). 스톱킹 통념은 가해자 정당화, 피해자 비난, 사건 축소화,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 구애행동화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가부장적 사고가 통용되던 구시대적인 관념으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강간통념과 같이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 요인 중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과 사건축소화에 대한 요인에서 스톱킹 행동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은 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부장적 사고와 성차별적 인식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이동길, 2015; 임인혜, 윤민지, 유성정, 김은석, 손은영, 윤은주, 2018).

다음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병적인 나르시시즘(Narcissism) 그리고 타인 기만에 대한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권력자로 인식하거나 타인보다 우월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조종할 수 있고, 조종해도 괜찮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관찰된다(Geis & Moon, 1981; Meloy, 1998). 그리고 타인을 기만하고 조종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거짓말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에 대한 죄책감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ristie & Geis, 1970; Gozma, Vrij, & Bull, 2001).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스톱킹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llen, Pathé & Purcell, 2000).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대인관계 사고는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다. 스톱킹 범죄자들은 B

군 성격장애와 관련된 특성이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enlen, Birmingham, Solberg, & O'Regan, 1997). 그 중에서도 자아정체성 불안, 의존 등과 관련이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와 극단적 분노 표출, 피해자 책임전가 등과 관련이 있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언급되었다(Meloy & Gothard, 1995). 모두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는 지나치게 타인을 의존하고 자기개념의 불안정성으로 친밀한 대상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특징이 스토킹 행위와 관련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다른 범죄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특성으로, 스토킹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자신을 은폐하면서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관찰하고 간접적인 위협만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Miller, 2012). 그 외에도 사이코패스 성향, 편집증적 사고, 강박적 사고도 스토킹 범죄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eberth, 1996; Mullen et al., 2000; Turner, 2020), 이런 문제들은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지지적인 대인관계 경험의 부재는 잘못된 관계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

스토킹 범죄는 범죄행동,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자의 성격, 정신질환 등을 토대로 수많은 유형분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Canter & Ioannou, 2004; Geberth, 1996; Meloy, 1998; Mullen, Pathe, Purcell, & Stuart, 1999; Sheridan, Blaauw, & Davies, 2003; Zona, Sharma, & Lane, 1993). 대부분 면식 관계와 비면식 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크게 구애를 바탕으로 애정적 욕구, 망상 등 비현실적 사고, 극단적 분노표출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1>를 통해 많은 연구들에서 구분해놓은 스토킹 범죄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심혜인, 김소현, 2023).

〈표 1〉 스톱킹 범죄 유형화*

연구자(연도)	유형	설명
Zona 등 (1993)	단순집착형	과거 관계있는 피해자와 관계회복, 복수
	애정집착형	유명인에 대한 일방적 애정 갈구
	애정망상형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착각으로 애정갈구
Geberth (1996)	사이코패틱 성격장애	정신질환 없으나 자극요인으로 인한 스톱킹
	사이코틱 성격장애	정신질환으로 인한 스톱킹
Meloy (1998)	단순집착형	과거 관계있던 피해자와 관계회복, 복수
	사랑집착형	유명인에 대한 일방적 애정갈구
	성욕증	피해자에 대한 과한 애정
	거짓피해자화증후군	피해자의 오인 및 거짓주장
Mullen 등 (1999)	거부당한 스톱킹	과거 관계있던 피해자와 관계회복, 복수
	복수형(분개형)	피해자에게 공포감, 두려움 유발목적
	친밀감 추구형	피해자의 사랑을 확신하며 관계형성 요구
	무능형	무관심한 피해자에게 관계형성 요구
	악탈형(포식형)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피해자 정보수집
Sheridan 등 (2003)	전파트너 스톱킹	과거 관계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짝사랑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애정갈구
	망상성 집착스톱킹	망상에 의한 관계형성 주장
	가학적 스톱킹	집착, 통제를 통한 만족감
Canter 등 (2004)	성적 스톱킹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유형
	친밀형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형성 요구
	소유형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공격-파괴형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살로 위협 가능성

* 심혜인, 김소현의 연구(2023)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판결문을 이용하여 스톱킹 행위에 따른 유형분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강소영, 2022; 강소영, 김한술, 2021; 김성희, 성현준, 2021; 심혜인, 김소현, 2023). 강소영 등(2021) 연구에서는 국내 스톱킹 처벌법에 기재되어있는 항목에 따라 스톱킹 행위를 변수로 설정하여 유형분석한 결과 배회형, 점진형, 감시형으로 구분하였다. 배회형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시형은 스톱킹 행위가 지속성을 지닐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감시형은 피해자에 대

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는 없으나 스토킹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진형은 초기 배회형과 감시형에서 진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침입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강소영, 김한솔, 2021). 이러한 유형분류는 스토킹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킹 범죄가 지속될 경우 단계별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성희 등(2021) 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범죄에서 전조증상으로 나타난 스토킹 행위를 분석하여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파괴적, 속박적, 소유적 스토킹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파괴적 스토킹 유형은 피해자의 주변이나 일상을 파괴하는 형태의 행위가 주로 관찰되었으며, 속박적 스토킹 유형은 감시하며 피해자의 사회활동이나 일상을 구속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소유적 스토킹 유형은 뒷조사를 하거나 SNS를 활용하여 괴롭히는 형태 등이 파괴적 스토킹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주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파괴적 유형과 속박적 유형은 사전 계획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스토킹 행위가 살인의 사전징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성희, 성현준, 2021).

심혜인 등(2023) 연구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동기로 구분하여 친밀한 관계의 애정을 갈구하는 관계요구형, 금전 및 합의 요구, 증간소음 등 문제해결형, 겁주기, 분노표출, 보복 등 분노형으로 분류하였다(강소영, 2022; 심혜인, 김소현, 2023). 이러한 유형분류는 범행동기와 범죄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달라야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유형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범죄행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특성에 맞게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교화 가능성 또는 처벌 방안을 정하는데 실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 연구들에서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범죄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등 정보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판결문은 2차 자료로 판사의 인식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다르게 선정될 수 있고, 법률에 의거한 행동의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토킹과 같은 다양한 행동양상을 띄는 범죄는 행동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심리상태,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포괄적인

주변 정보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스톱킹 범죄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성격특성에 대해 주로 성격장애와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스톱킹 행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심리적 유형이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톱킹 범죄자들에게 직접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심리적 유형분석을 시도하고, 그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표본 수집은 편의 표집방법으로 스톱킹 처벌법에 의해 수강명령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스톱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약 2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4개의 표본이 수집되었으나, 인식척도에서 20% 이상 결측값이 나타나거나, MMPI-2 검사를 전체 무응답으로 제출하거나, MMPI-2 결과 타당도 척도에서 극단적인 이상치가 나타나 신뢰로운 해석이 불가능한 대상자 등 총 25개를 제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79개의 표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톱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을 확인하여 심리적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왜곡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안상수 등(2007)의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척도(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 PAI 검사의 소척도 중 경계선적특징 척도(PAI-BOR),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척도(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 김민경 등(2010)의 기만·조종 척도를 사용하였다(김민경, 이장한, 2010; 안상수 등, 2007; 이동길, 2015; 이수정, 김재경, 2011; 임인혜 등, 2018; 홍상환, 김영환, 1998). 또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II; MMPI-2)를 이용하여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MMPI-2 검사는 병원장면에서 흔히 사용되나, 많은 연구결과에서 범죄자들의 성격특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동훈, 양모현, 권은비, 오대연, 2019; 이수정, 공은정, 공정식, 2006; 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2009).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식척도, MMPI-2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인식척도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큼 표본 크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개인 간 관계에 초점을 두어 잠재집단을 분석하는 대상 중심적 접근의 분석방법보다 변수 간 유사성을 측정하여 집단분류를 실시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Bergman & Magnusson, 1997; 김기영, 전명식, 1994). 유형분석은 다면성별의식 척도, PAI-BOR 척도, SRPS 척도, 기만/조종 척도가 포함되었고,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먼저, 변수를 표준화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Ward의 군집방법으로 제공 유클리디안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 측도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 수를 산출하는데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검토하여 최적의 군집 수를 산출한 뒤,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를 각 군집별로 할당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유의성과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킵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MMPI-2)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24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 특성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N=79)

성별	명	%
남	59	74,7
여	20	25,3
나이대	명	%
20대	10	12,7
30대	30	38,0
40대	19	24,0
50대	14	17,7
60대 이상	6	7,6
지역	명	%
서울·인천·경기	54	68,4
충청·세종	5	6,3
광주	1	1,3
경상·부산·울산	19	24,0
학력	명	%
중졸 이하	3	3,8
~ 고졸 이하	28	35,4
~ 전문대졸 이하	17	21,5
~ 4년제졸 이하	27	34,2
대학원졸 이상	4	5,1
직업	명	%
무직	17	21,5
비정기직	22	27,8
정기직	40	50,7
결혼경험	명	%
있음	26	32,9
없음	53	67,1
전과(강력범죄)	명	%
있음	26	32,9
없음	53	67,1

<표 2>에서는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가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74.7%(59명)로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나이대는 20~30대가 50.7%(40명), 40대 이상이 49.3%(39명)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인 사람이 68.4%(54명)로 표본의 과반수가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인 78.5%(62명)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경험에서는 67.1%(53명)가 결혼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결혼경험은 초혼, 재혼, 이혼, 사별 등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결혼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였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인 집단이 60.8%(48명), 고졸 이하의 집단이 39.2%(31명)로 응답하였다. 마지막 전과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범죄 전과가 없는 집단이 67.1%(53명)으로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 있다. 강력범죄 전과는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의미한다.

〈표 3〉 스토킹 범죄특성

(N=79)

피해자와의 관계	명	%	스토킹 기간	명	%
친지 가족	2	2.5	1개월 이하	57	72.1
헤어진 연인	39	49.4	2 ~ 5개월 이하	12	15.2
직장동료, 지인	9	11.4	6개월 ~ 1년 미만	4	5.1
일면식	8	10.1	1년 이상 ~ 3년 미만	2	2.5
비면식	6	7.6	3년 이상 ~ 5년 미만	1	1.3
무응답	15	19.0	무응답	3	3.8

<표 3>에서는 스토킹 범죄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있다.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 연인, 전 배우자 등 헤어진 연인 관계인 경우가 39명(49.4%)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 동료 및 지인은 9명(11.4%), 서비스 제공자 등 일면식의 관계는 8명(10.1%), 피해자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비면식은 6명(7.6%)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스토킹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하가 57명(72.1%), 2~5개월 이하가 12명(15.2%)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스토킹이 지속된 경우가 87.3%(69명) 포함되어 있다.

2.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 분류

〈표 4〉 인식척도간 상관분석

(N=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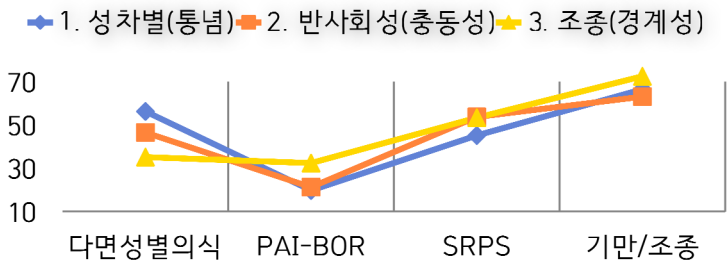
인식척도	1.	2.	3.	4.
1. 다면성별의식	1			
2. PAI-BOR	.035	1		
3. SRPS	.189	.512**	1	
4. 기만/조종	.283*	.387**	.352**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서 나타난 인식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척도 간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스톱킹 범죄자들의 왜곡된 신념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첫 번째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참고하여 군집의 개념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군집수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3개의 군집으로 선정하였다. 군집분석에 따라 분류된 표본 수는 군집1이 38.0%(30명), 군집2는 36.7%(29명), 군집3은 25.3%(20명)으로 나타났다. K-평균 군집분석을 3개의 군집 수로 지정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스톱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유형별 인식척도 평균 프로파일



<표 5> 스토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군집	인식척도	M	SD	N(%)
1. 성차별(통념)	다면성별의식	56.23	9.555	30(38.0)
	PAI-BOR	19.73	9.325	
	SRPS	45.13	7.305	
	기만/조종	66.47	6.016	
2. 반사회성(충동성)	다면성별의식	46.52	10.221	29(36.7)
	PAI-BOR	21.24	7.219	
	SRPS	53.69	7.760	
	기만/조종	63.07	10.201	
3. 조종(경계성)	다면성별의식	35.10	10.310	20(25.3)
	PAI-BOR	32.35	10.980	
	SRPS	53.30	10.043	
	기만/조종	72.45	8.262	
전체	다면성별의식	47.32	12.901	79(100.0)
	PAI-BOR	23.48	10.385	
	SRPS	50.34	9.103	
	기만/조종	66.73	8.991	

<표 5>에서는 스토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인식척도의 특성이 나타나있다. 군집1에서는 다면성별의식 척도 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2에서는 SRPS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3에서는 기만/조종 척도와 PAI-BOR 척도 점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별에 유의미한 인식특성을 토대로 군집1은 성차별(통념) 유형, 군집2는 반사회성(충동성) 유형, 군집3은 조종(경계성)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유형이 유의미하게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유형별 중요한 변수와 집단의 예측률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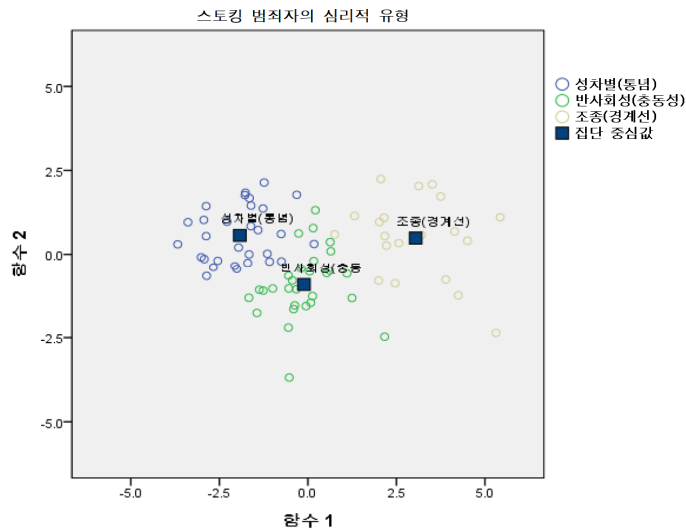
〈표 6〉 스토커 심리적 유형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변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	정준 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1	다면성별의식	-.1483	-.148	-.424	
	PAI-BOR	.575	.063	.283	
	SRPS	.535	.065	.192	
	기만/조종	.694	.083	.152	
	Eigen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da	χ^2	df
	3.899	.892	.135	149.190***	8
2	다면성별의식	.117	.012	.138	
	PAI-BOR	.552	.061	.233	
	SRPS	-.1126	-.137	-.465	
	기만/조종	.721	.087	.460	
	Eigen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da	χ^2	df
	.512	.582	.661	30.814***	3

* p < .05, ** p < .01, *** p < .001

3개의 군집에 따라 2개의 판별식이 확인되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값(Eigenvalue),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da값에 따라 판별식 2에 비해 1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와 구조행렬에서 상관관계값을 통해 3개의 군집을 구분하는데 다면성별의식, 기만/조종, SRPS 척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형의 명칭이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판별분석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표 7〉 판별함수계수에 의한 유형분류 적중률

유형 (명)	집단중심치		예측되는 소속집단			분류 정확도
	1	2	성차별	반사회성	조종	
성차별(통념) (30)	-1.921	.566	28(93.3)	2(6.7)	0(0.0)	94.9%
반사회성(충동성) (29)	-.111	-.921	1(3.4)	28(96.6)	0(0.0)	
조종(경계성) (20)	3.043	.487	0(0.0)	1(5.0)	19(95.0)	

<표 7>에서는 각 유형의 판별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집단 중심치는 성차별(통념) 유형이 -1.921,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이 -.111, 조종(경계성) 유형이 3.043으로 유형 간 평균 차이가 크게 관찰되어 유형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분류의 적중률을 살펴보면, 성차별(통념) 유형이 93.3%,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이 96.6%, 조종(경계성) 유형이 95%가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류정확도는 94.9%로 나타나 비교적 적절하게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적 유형 분류에 따른 성격특성

먼저, 성격특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8>에서는 심리적 유형과 성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8>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별의 차이

(N=79)

성별	유형1	유형2	유형3	total	df	χ^2
	성차별(통념) (N=30)	반사회성(충동성) (N=29)	조종(경계성) (N=20)			
	N(%)	N(%)	N(%)			
남	26(44.1)	22(37.3)	11(18.6)	59(100.0)	2	6.398*
여	4(20.0)	7(35.0)	9(45.0)	20(100.0)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성차별(통념) 유형에 44.1%(26명)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조종(경계성) 유형에 45.0%(9명)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표본 수가 부족하여 성별에 따른 심리적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남성의 비율이 높고, 타인에 대한 부적응적 의존도가 강한 조종(경계성) 유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스톱킹 범죄자들도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전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스톱킹 범죄자 심리적 유형에 따라 성격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MMPI-2 결과를 임상척도, 재구성 임상척도, 성격병리5요인 척도, 내용척도, 보충척도로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임상척도와 보충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분석결과에 대해 <표 9> ~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9〉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재구성 임상척도의 차이

(N=79)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RCd	43.73(9.812)	49.86(13.076)	54.80(15.409)	4.786*	3 > 1
RC1	46.87(11.038)	48.10(9.240)	52.10(12.452)	1.466	.
RC2	48.90(10.768)	52.66(12.913)	51.95(11.941)	.812	.
RC3	42.73(10.349)	47.28(9.896)	50.25(12.594)	3.093	.
RC4	45.70(7.953)	52.28(10.198)	48.75(9.613)	3.730*	2 > 1
RC6	45.13(8.224)	47.00(9.787)	49.65(12.184)	1.247	.
RC7	44.50(10.631)	46.38(8.343)	52.60(12.176)	3.880*	3 > 1
RC8	43.60(9.708)	46.28(7.653)	50.90(10.387)	3.790*	3 > 1
RC9	42.10(9.182)	44.34(7.738)	48.20(9.128)	2.979	.

* $p < .05$, ** $p < .01$, *** $p < .001$

<표 9>에서는 의기소침(RCd), 반사회적 행동(RC4), 역기능적 부정정서(RC7), 기태적 경험(RC8)에서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자신이 아픈 상태이며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 환자적 특성을 호소하는 의기소침(RCd) 척도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짜증 등 부정적인 정서에 머물러 있으며 지나친 걱정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실패에 대한 집착과 반추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적 부정정서(RC7) 척도특성이 관찰된다. 그리고 자아기능과 현실검증력 손상과 연관이 있는 기태적 경험(RC8) 척도특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은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과거 또는 현재에 반사회적 행동이나 가족갈등을 경험하고 법적문제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겪고 있는 반사회적 행동(RC4) 척도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10〉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성격병리 5요인척도의 차이

(N=79)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AGGE	45,50(8,266)	47,97(9,730)	46,40(7,301)	.613	.
PSYC	42,37(8,401)	45,21(10,923)	49,50(9,997)	3,184*	3 > 1
DISC	43,47(7,890)	50,59(11,185)	49,40(10,797)	4,222*	2 > 1
NEGE	44,63(9,626)	48,10(8,612)	55,60(13,020)	6,942**	3 > 1 3 > 2
INTR	51,53(12,533)	53,17(12,632)	54,15(13,035)	.275	.

* p < .05, ** p < .01, *** p < .001

<표 10>에서는 정신증(PSYC), DISC(통제 결여), 부정적 정서성(NEGE) 척도에서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기태적 감각을 경험하는 등 현실검증력이 다소 낮은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정신증(PSYC) 척도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기능적 부정정서(RC7)척도와 관련이 있으며, 분노와 짜증 등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하고 무기력하면서도 의존적인 특성이 관찰되는 부정적 정서성(NEGE) 척도점수가 성차별(통념) 유형과 반사회성(충동성)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에서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행동통제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이며 충동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통제결여(DISC) 척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11〉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내용척도의 차이

(N=79)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ANX	48,10(10,176)	51,62(14,120)	53,75(13,238)	1,315	.
FRS	46,60(9,431)	45,62(5,766)	52,30(10,235)	4,041*	3 > 2
OBS	45,07(11,386)	46,69(8,836)	50,45(12,059)	1,540	.
DEP	48,47(12,673)	52,62(15,340)	53,25(15,697)	.875	.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HEA	46.77(9.623)	48.07(10.229)	52.90(11.107)	2.271	.
BIZ	43.43(8.439)	45.55(9.701)	46.95(9.259)	.947	.
ANG	47.03(10.417)	44.38(8.178)	53.20(14.159)	4.035	.
CYN	44.87(10.092)	47.10(9.589)	50.05(11.691)	1.510	.
ASP	45.00(11.250)	46.76(9.345)	46.90(9.386)	.301	.
TPA	46.37(9.771)	45.97(8.196)	49.85(11.042)	1.117	.
LSE	44.23(7.986)	47.31(11.301)	50.30(13.731)	1.896	.
SOD	50.57(12.921)	51.69(10.512)	54.65(9.349)	.811	.
FAM	47.20(10.094)	49.69(12.505)	51.00(14.868)	.628	.
WRK	43.87(9.205)	47.31(12.918)	52.90(13.322)	3.545*	3 > 1
TRT	45.27(10.188)	49.03(12.500)	48.25(12.443)	.841	.

* p < .05, ** p < .01, *** p < .001

<표 11>에서는 공포(FRS), 직업적 곤란(WRK)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경계성) 유형이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에 비해 특정 상황 및 대상 등 일정한 두려움과 관련된 공포(FRS) 척도특성을 더 보고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성차별(통념) 유형보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 직업 수행력과 관련된 문제(WRK)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높게 나타난 분노(ANG) 척도는 Levene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05보다 유의값이 작게 나타나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스토킹 범죄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토대로 심리적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성격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척도, PAI 경계선적특징 척도(PAI-BOR),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척도(SRPS), 기만/조종 척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은 성차별(통념) 유형, 반사회성(충동성) 유형,

조종(경계성) 유형 등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분류에 따른 MMPI-2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성격특성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스톱킹 범죄자에게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성격적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격적 결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스톱킹 범죄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반사회성 특징과 경계성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Meloy & Gothard, 1995). 그리고 MMPI-2에서 나타난 성격특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척도 간 유사한 양상으로 결과가 관찰되어, 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에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은 여성비하적인 사고가 관찰되는 성차별(통념) 유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자기개념이 불안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의존성을 보이는 조종(경계성) 유형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스톱킹 범죄양상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성차별(통념) 유형은 여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해 자기합리화를 시도할 수 있다(Meloy & Gothard, 1995). 그러나 결함적 성격특성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통념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스톱킹 행위에 대한 범죄인식력을 높여줄 경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 또는 보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스톱킹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은 타인에게 진정한 애착을 갖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스톱킹에 몰두하는 것이 쉽지 않다(Meloy, Rivers, Siegel, Gothard, Naimark, & Nicolini, 2000; Miller, 2012).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표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소거시키는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스톱킹 행위로 인한 목적달성 가능성보다 법적 불이익을 강하게 인지시키면서 법적 조언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는 피해자의 법적 안전망을 가시적으로 강화시켜 피해자를 혼자 상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면봉쇄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

적 테두리의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스토킹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유도할 수 있다.

조종(경계성) 유형은 자기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기만하거나 조종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확실한 망상은 아니더라도 다소 현실검증력이 낮은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스스로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신념이 나타날 수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관계가 손상될 경우 낮은 자존감과 끊임없는 집착에 의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관계회복에 쏟아내며, 심하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길 수 있다(Boon & Sheridan, 2001; Sheridan & Davies, 2010). 피해자에 대한 집념을 소거시키는 것은 법적인 접근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적 접근이 동반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통념을 함께 다루었으며, MMPI-2를 이용한 성격특성을 확인하여 스토킹 범죄자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표본 수집의 한계로 모든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의 표본 수집이 저조하여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보다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 표본이 추가적으로 수집되거나, 범죄행동과 심리적 유형 간 연관성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심리적 특성에 따른 범죄행동을 예측하고,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톱킹범죄의 특성과 진단-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0(1), 55-84.
- 강소영, 김한솔. (2021).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톱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159-185.
- 경찰청 보도자료. (2023.5.2.) 경찰청-여가부, 스톱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해나간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30501152832394&q_tab=&q_searchKeyTy=&q_searchVal=&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 고명수. (2023). 스톱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입법학연구, 20(1), 95-118.
- 김기영, 전명식. (1994). SAS 판별분석 및 분류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42-47.
- 김민경, 이장한. (2010). 기만/조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2(3), 1339-1349.
- 김성희, 성현준. (2021). 스톱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49-74.
- 김잔다. (2015). 스톱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치안정책연구, 29(3), 135-165.
- 심혜인, 김소현. (2023). 스톱킹 범죄 유형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9(1), 107-12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 2-204.
- 이동길. (2016). 스톱킹 통념이 스톱킹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동훈, 양모현, 권은비, 오대연. (2019). 범죄유형 및 수감기간에 따른 남성 출소자의 MMPI-2 반응 특성 비교. 재활심리연구, 26(2), 19-35.
- 이수정, 공은경, 공정식. (2006). MMPI에 근거한 국내 남자 살인범 성격프로파일링 및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47-64.

- 이수정, 공정식. (2007). 정신병질에 따른 국내 살인범들의 살인행위 특성분석. *한국경찰학회보*, 9(1), 203-225.
- 이수정, 김재경. (2011).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SRPS)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 2(1), 35-47.
- 이현정.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4), 265-284.
- 임인혜, 윤민지, 유성경, 김은석, 손은영, 윤은주. (2018). 한국판 가부장 신념 척도 (PBS-K)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4), 125-143.
- 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2009).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의 MMPI-2 하위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049-1068.
- 한동효, 허영희. (2022). 현행 스톱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30(1), 225-256.
- 한민경. (2021). 법정에 선 스톱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톱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65-92.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1.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tholomew, K., Henderson, A., & Dutton, D. (2012). Insecure attachment and abusive intimate relationships. In *Adult attachment and couple psychotherapy*, Routledge Press, 67-85.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 p>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 , 9(2), 291-319.
- Boon, J. C., & Sheridan, L. (2001). Stalker typologies: A law enforcement perspective. *Journal of Threat Assessment*, 1(2), 75-9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 Canter, D. V., & Ioannou, M. (2004). A multivariate model of stalking behaviours. *Behaviormetrika*, 31(2), 113-130.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Christie, R., & Geis, F. L. (1970). Chapter I-Why Machiavelli. *Studies in machiavellianism*, Academic Press, 1-9.
- Davis, K. E., Ace, A., & Andra, M. (2000). Stalking perpetrators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partners: Anger-jealousy, attachment insecurity, need for control, and break-up context. *Violence and Victims*, 15(4), 407-425.
- De La Ronde, C., & Swann Jr, W. B. (1998). Partner verification: Restoring shattered images of our inti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374.
- Dunlap, E. E. (2010). *Stalking myth acceptance: An investigation of attitudinal constructs associated with gender differences in judgments of intimate stalking*. University of Kentucky.
- Dunlap, E. E., Lynch, K. R., Jewell, J. A., Wasarhaley, N. E., & Golding, J. M. (2015). Participant gender, stalking myth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ing in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A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approach. *Psychology, Crime & Law*, 21(3), 234-253.
- Geberth, V. J. (1996).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Vol.5), CRC Press.
- Geis, F. L., & Moon, T. H. (1981). Machiavellianism and de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4), 766.
- Gozna, L. F., Vrij, A., & Bull, R. (2001).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perceptions of lying in everyday life and in a high stake situ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7), 1203-121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Cluster analysis, Chapter 9 in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 Hall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 Holtzworth-Munroe, A., Stuart, G. L., & Hutchinson, G. (1997). Violent versus nonviolent husbands: Differences in attachment patterns, dependency, and jealous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3), 314.
- Kernberg, O. (1984). *Severe personality disorders: Psychotherapeutic strateg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ienlen, K. K., Birmingham, D. L., Solberg, K. B., & O'Regan, J. T. (1997).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ic and nonpsychotic stalk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25(3), 317-334.
- Meloy, J. R. (1998). The psychology of stalking. In *The psychology of stalking*, Academic Press, 1-23.
- Meloy, J. R., & Gothard, S. (1995). Demographic and clinical comparison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Am J Psychiatry*, 152(2), 258-263.
- Meloy, J. R., Rivers, L., Siegel, L., Gothard, S., Naimark, D., & Nicolini, J. R. (2000). A replication study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1), 147-152.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9). An attachment and behavioral systems

- perspective on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6(1), 7-19.
- Miller, L. (2012). Stalking: Patterns, motiv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6), 495-506.
- Mirsky, A. F., & Siegel, A. (1994). The neurobiology of violence and aggression(Vol.2).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 Mohandie, K., Meloy, J. R., McGowan, M. G., & Williams, J. (2006). The RECON typology of stal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upon a large sample of North American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1(1), 147-155.
- Mullen, P. E., & Pathé, M. (1994). Stalking and the pathologies of love.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8(3), 469-477.
- Mullen, P. E., Pathe, M., & Purcell, R. (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n, P. E., Pathe, M., Purcell, R., & Stuart (1999). Study of stalk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244 - 1249.
- Patton, C. L., Nobles, M. R., & Fox, K. A. (2010). Look who's stalking: Obsessive pursuit and attachment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3), 282-290.
- Pinel, E. C., & Swann Jr, W. B. (2000). Finding the self through others: Self-verification and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Self,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132-152.
- Serin, R. C. (1991). Psychopathy and violence in crimina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4), 423-431.
- Sheridan, L. P., Blaauw, E., & Davies, G. M. (2003). Stalking: Knowns and unknowns. *Trauma, Violence, & Abuse*, 4(2), 148-162.
- Sheridan, L. P., & Davies, G. M. (2010). Stalking. In J. R. Adler, & J. M. Gray (Eds.), *Forensic psychology: Concepts, debates and practice(Vol.2)*, New York: Willan Publishing.

- Skoler, G. (1998). The archetypes and psychodynamics of stalking. In *The psychology of stalking*. Academic Press.
- Spence-Diehl, E. (1999). *Stalking: A handbook for victims*. Learning Publications, Incorporated Press.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07). The state of the art of stalking: Taking stock of the emerging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1), 64-86.
- Stets, J. E. (1995). Job autonomy and control over one's spouse: A compensatory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258.
- Stets, J. E., & Burke, P. J. (2005). Identity verification, control, and aggression in marriag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2), 160-178.
- Stryker, S., & Burke, P. J. (200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n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84-297.
- Swann Jr, W. B. (1990). To be adored or to be known? The interplay of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In ET Higgins & R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2, 408-448.
- Turner, J. H. (1987). Toward a sociological theory of motiv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27.
- Turner, Z. (2020). *Stalking and Attachment Theory: Causes and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Williamson, S., Hare, R. D., & Wong, S. (1987). Violence: Criminal psychopaths and their victi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19(4), 454.
- Zona, M. A., Sharma, K. K., & Lane, J. (1993). A comparative study of erotomanic and obsessional subjects in a forensic sampl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8, 894-90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sychological Types Related to Distorted Perception
of Stalking Offenders and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Sexism and MMPI-2

Hye Ji Lee* · Soo Jung Lee**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lking offenders in more detail to understand stalking crimes that appear in various behavior patterns. First, based on psychological theory and distorted perception, we tried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perpetrator. Next, the types of stalking offenders studied in Korea and abroad were identified, and the types of stalking offenders in Korea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MMPI-2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type.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tion analysis on 79 domestic stalking offenders, they were divided into types of gender discrimination(misconception), antisocial(impulsivity), and manipulation(borderline). A biased view of women was observed in the type of gender discrimination (misconception), and antisocial(impulsivity) type was found to have antisocial behavior and lacked behavioral control. The manipulation(borderline) type was found to have low self-esteem and high anxiety. Based on these results, we tried to propose ways to reduce the risk of recidivism according to each type.

❖ Key words: Stalking, Distorted perception, Psychological type, Personality, MMPI-2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in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in Kyonggi University.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 쟁점과 과제*

김남규** · 박다윤*** · 노희주**** · 김도선***** · 김연수*****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톱킹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근의 개정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의 법제 검토와 국내 입법진행 상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방향과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잠정조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운용의 주체는 3원화하여 부착명령은 법원이, 장치 관리 및 탈부착은 경찰이, 부착자 위치추적 감시는 법무부가 각각 수행한다. 다만,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인적 교류를 제안한다. 셋째, 부착기간은 최대 2개월로 하되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다른 잠정조치에 부과되는 벌칙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논의와 제도도입의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과 보완을 위한 환류체계를 제안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6.30.2.87>.

❖ 주제어 : 스톱킹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피해자보호, 기본권, 전자감독제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7589)

** 주저자: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수료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융합보안학과 교수(kimys36@dongguk.edu)

I. 서론

우리나라는 오랜 논의 끝에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법안 통과까지 무려 22년이나 걸린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여정이 험난했음을 보여준다. 스토킹을 단순 ‘구애’ 행위로 보았던 낮은 인식 수준은 스토킹의 개념 정의 자체를 어렵게 했다. 또, 신체적 폭력행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해치는 경범죄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했던 형사정책의 고정관념을 넘어서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¹⁾

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2021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이나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2022)가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제재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26.9%에 불과했고, 그 이유로 ‘현재의 제재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법 시행 1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입법적 미비점 보완 논의가 활발하다.²⁾ 대표적으로 법의 실효성 강화 내지 미비점 보완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온라인 스토킹 규정 신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제도 도입,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이다. 이들 개정안 내용은 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여러 법률안 가운데, 법무부의 개정법률안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 349건 중 대부분이 ‘찬성’ 의견이었고(법제처, 2022), 온라인 실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법안 도입에 대해 95.2%가 찬성

1)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제1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의 주무부처가 경찰청(생활질서과),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보다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다 강조한 것이었다.

2) 2021.3.24.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2023.4.30. 현재 개정안 43건이 발의되었고, 이 중 38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5.6.검색).

하는 등(문화체육관광부, 2022)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감독제도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은 인정하나, 지나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혐의 수준에 불과한 스톱킹 행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비판은 기존 위치추적 전자감독 부착제도가 형선고 이후 단계의 범죄자에게 이루어지던 조치였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감독제도는 수사, 재판,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불구속 재판의 확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³⁾ 즉,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도 위치추적장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 범죄로부터의 국민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형벌권 내지 권력작용에 해당하는 제재수단의 확장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또, 국내 제도상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센터(중앙, 대전)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제도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스톱킹처벌법의 제정 이후 지적되고 있는 입법적 불비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였던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와 스톱킹처벌법 상의 피해자보호조치, 그리고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개별 제도의 상호보완 관계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또, 해외에서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스톱킹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의 스톱킹처벌법 개정법률안 논의과정을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법률안 자체가 스톱킹처벌법 개정논의인 점에 비추어 스톱킹 범죄로 제한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만, 해외의 경우 스톱킹을 포함하여 관계성 범죄

3) 전자장치부착법 제정 당시(2007.4.27.) 이 법의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었으나, 2009.5.8. 법개정을 통해 특정범죄(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확대되었고, 2010.4.15. 살인범죄, 2012.12.18. 강도범죄 등을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3.29.에는 스톱킹범죄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하였고, 2023.6.21.에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도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가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운용 측면에 집중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II. 국내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그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의율되던 스토킹 행위는 별도의 판단기준과 제재 규정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기관에 의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박찬걸, 2021).

다만, 신당역 살해 사건,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해 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의 피해자 보호제도, 추가적인 개정법률안의 피해자 보호강화 논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등을 각각 살펴보았다.

1.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그 밖에 성격이나 유형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김혜영, 2022).

잠정조치는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보호조치이며,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잠정조치

의 유형은 4가지이며,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그리고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특히 잠정조치는 다른 피해자 보호조치와는 달리 스톱킹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각각의 잠정조치는 병과가 가능하며(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2항),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혹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표 1〉 스톱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구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대상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격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신고 시 스톱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유형	1. 스톱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2. 스톱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수사 3.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4. 상담소, 보호시설로의 인도	1.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 서면 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톱킹 신고에 대한 조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

나. 잠정조치의 문제점과 비판적 검토

현행 스톱킹처벌법은 초동조치 단계부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피해자 보호에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톱킹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스톱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의 미흡함을 보여준 사건 중 하나이다. 당시 피해자를 스톱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는 법원의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시면, 2022).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잠정조치는 약 6,085건이다(경찰청, 2022).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최종결정률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위반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잠정조치의 위반율은 508건(8.3%)에 달하며, 잠정조치에 비해 위반 시 제재 수준이 경미한 긴급응급조치는 421건(12.4%)이다.

〈표 2〉 잠정조치 시행 현황

구분	경찰신청 (건)	최종결정		위반	
		건수	결정율	건수	위반율
'21년	1,059	869	82.1	58	6.7
'22.10월	6,061	5,216	86.1	450	8.6
계	7,120	6,085	85.5	508	8.3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대부분의 스톱킹 피해자들은 스톱킹 행위자와의 신속한 분리를 원하고 있다. 스톱킹의 특성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피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대방을 제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곽영길 외, 2011). 실제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톱킹 피해자들은 ‘스톱킹 행위자로부터의 보호(접근금지 등)’(67.8%)를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반면, 잠정조치를 비롯한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가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스톱킹 행위자의 의지와 협조에 준수 여부를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한민경, 2022). 이처럼 피해자의 욕구와 대비되는 현행 잠정조치 시행 현황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2. 스톱킹처벌법 개정법률안 현황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 스톱킹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자 사망사건에

따라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는 스톱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다양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톱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법무부, 2022). 입법예고에 따른 스톱킹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 번째로, 스톱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이다. 스톱킹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는 경우, 2차 스톱킹 혹은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김혜영, 2022).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톱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로,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스톱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용 단계, 주체,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연구의 제4장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스톱킹 처벌 규정의 신설이 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스톱킹 행위의 유형은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톱킹하는 때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보호제도 도입,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영 현황

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국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제정, 2008년 9월 53명의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15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자장치부착법의 명칭·대상 변경 등 주요 연혁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과 단계는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시행 초기에는 형 집행 종료 후의 성폭력 사범만이 대상이었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사범(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살인죄, 강도죄)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범위이다. 이후, 죄종과 관계없이 가석방과 가중료, 가출소, 보석, 보호관찰을 받는 집행유예 대상자들까지 제도의 시행 단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정문과 후문을 모두 아우르게 되었으며 단기구금의 대체 형벌로도 논의되고 있다(조운오, 2022).

<표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법률 제·개정 연혁

법률제명	년도	주요 내용	부착 기간	운영 주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008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	5년 [∞] 10년	법무부 위치 추적 중앙 관제 센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009	미성년자 유괴범죄 추가		
	2010	살인범죄 추가, 3년 이내 성폭력 범죄자 소급적용 추가	10년 [∞] 30년 (가중시 45년)	
	2012	강도범죄 추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9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사범, 고위험 대상자에게 1:1 감독 시행		
	2020	전자장치 부착 조건의 보석과 가석방 대상자가 기존 4대 특정 사범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	위반사항에 대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2022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열람 근거 규정 마련		

출처: 법무부 누리집의 전자감독제도 소개글을 토대로 재구성

나. 스톱킹 범죄자 대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도입

형사사법망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가출소/가석방/집행유예에 이어 확정 판결 전의 단계에서까지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선고 후 접근금지명령이나 처벌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까닭에 피해자 안전조치, 특히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안전조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의 개발, 시행 중에 있다(김연수·이재영, 2020). 이는 경찰의 신변 보호 서비스로 사용 중인 스마트워치 기술과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위치추적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또는 악세서리 형태의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는 사후대응적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피해자 생활패턴’을 안심존으로 설정하여 스톱킹 행위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 시 보다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가능하다.

4.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유형 및 현황

현재 우리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그 밖에도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본인 혹은, 경찰이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범죄피

해자 안전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김광현, 2022). 개별 사건의 정확한 위험도 파악을 위하여 현재 경찰은 자체적 산출 위험도 등급에 따른 맞춤형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위험도 등급별 맞춤형 안전조치 내용

위험도	등급별 필수 고려 항목	공통조치
매우 높음	- 주거 이전(이전비 지원, 안전숙소 ‘10일 이상’, 보호시설 등) - CCTV 설치,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피해자 권고, 피해자 행동요령 및 협력의 무 강조
높음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출처: 경찰청. (2022). 스토킨 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세미나자료 재구성.

나. 경찰청 피해자 안전조치 내 스마트워치 활용 관련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 안전조치 역시 사후대응적이며 사건 접수 후 스토킨 행위자 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가 현재 유일하다. 스토킨 처벌법의 개정 이전까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킨 행위자가 불구속 상태인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치’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성 판단 결과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매우 높은 경우의 필수적 고려 항목으로 지정되어있다. 또, 피해자의 권고문을 기반으로 피해자 개별상황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일선 실무에서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김광현, 2022). 실제로 스마트워치 지급현황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8,945대지만 보유현황은 3,700대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6,30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기의 원활한 보급이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현재의 스마트워치만으로는 현장의 수요와 공백을 모두 메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해외의 법제도 검토

해외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특정 범죄에 초점을 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시행하기보다 범죄의 성격,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즉, 스톱킹 범죄에 한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되기보다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과 같이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해외 법제도 검토 역시 스톱킹 범죄로 한정하지 않고, 관계성 범죄 전반을 포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점에서 해외의 제도운영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영국의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가. 관련 법률

영국의 관계성 범죄(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포함)와 관련하여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근거 법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법인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가 있다. 이 법은 클레어법(Clare’s Law)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클레어라는 여성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제정이 되었다. 이 법률은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파트너의 폭력행위 전과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스토킹 방지법(Stalking Protection Act)”이 있다. 이는 스톱킹 관련 법률로써, 이 법률에 의해 스톱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성격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이 된다.

경찰단계가 아닌 법원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로는 “가정폭력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DVPO)”가 있다. 이 법률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행위

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법원에서 발부된 보호명령서를 통해 가해자에게 GPS기반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법률은 2014년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를 시작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의 특정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 제도 운영실태

영국의 가해자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운영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스토킹 및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은 초동조치의 일환으로 임시명령서를 발부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이후 법원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명령서를 발부하며, 위치추적 장치는 경찰이 집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관계성 범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찰관으로 구성된 팀인 “Domestic Abuse Investigation and Safe Guarding Unit(DAISU)”를 조직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평균적으로 14일에서 28일간 지속되며 이 기간에 전자장치 부착자는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을뿐더러 몇 가지의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경고, 벌금, 구속, 기간연장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2. 호주의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가. 관련 법률

호주에서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의 범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75년 ‘연방가족법(Commonwealth Family Act 1975)’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을 통제하거나 강압, 공포심을 주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의 된다. 이후 2007년 ‘가정 및 가족 폭력법(Domestic and Family Violence Act 2007)’에 따르면 가해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현재 및 이전 파트너, 전 파트너의 새로운 파트너, 각 원주민 문화에

따라 친족의 일부인 모든 사람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두고 있다. 또한 ‘가정 및 개인폭력 법(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에 따라 스톱킹 행위⁴⁾가 법제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톱킹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Domestic Crime)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호주는 ‘가정폭력(가족보호)법(The Domestic Violence(Family Protection) Act 2012)’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사안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2017년 ‘교정보호법(Corrective Service Act 2006)’의 개정안에 따라 가석방된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요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위치추적 단일 목적을 지니고 활용되는 것이 아닌 가석방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감시감독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2018년 ‘보석법(Bail Act 1980)’의 개정에 따라 보석 조건부 석방되는 인원에게도 위치추적장치 부착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종합해보자면, 보석 및 가석방 대상의 모든 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보석 및 가석방이 된 호주의 가정폭력 사범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제도 운영실태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는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호주의 ‘가정폭력(가족보호)법(The Domestic Violence(Family Protection) Act 2012)’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경찰보호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후 가해자는 즉시 행동을 수정해야하며, 24시간동안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일정 거리 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보호통지서를 발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최대 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에 판사에게 보

4) 스톱킹은 한 사람이 계속된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 타인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에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고통, 통제 상실, 두려움 또는 괴롭힘을 야기하며 최소 두 번 이상 발생함.

호명령신청을 하게 된다. 구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계속 구금할 수 있다(Queensland Police Service, 2023).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보석에 준하는 자가 위치추적 장치의 대상이되며 이들의 모니터링 주체는 경찰이 된다. 위치추적 장치의 장착 제거는 QPS 감시소(QPS Watch House)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QPS 직원들은 장치에 대한 장착, 활성화, 배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감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시 즉각적으로 경찰에 알리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경찰들은 위반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출동을 지원한다(Queensland Police Service, 2023).

3. 미국의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가. 관련 법률

미국 가정폭력 법률은 1882년 미국 매릴랜드 주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1992년까지 미국의 51개 주 모두 가정폭력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US Code)에 따르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피해자의 현재 또는 전 배우자, 동거하는 자 혹은 동거했던 자가 저지를 폭력 중 경범죄, 중범죄를 포함한 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가정폭력을 ‘한 파트너가 다른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권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학대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스토킹을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23). NIJ에서 정의한 스토킹은 ‘스토키가 되기 이전에 개인적 혹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스토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스토킹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 내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일부 주 정부 별 가정폭력 정의 내 스토킹 행위

주(州) 정부	정의
캘리포니아	가정 폭력은 가해자가 고의성, 악의성, 반복성을 지니고 타인을 따라다니거나(Following)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
플로리다	가정폭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Following) 괴롭히는 것 을 의미. 만약 스토킹 행위 중 확실한 위협이 포함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음.
텍사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두려워 하는 행동을 두 번이상 수행 하여 피해자가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

출처: FindLaw(2021). <https://www.findlaw.com/family/domestic-violence/stalking-and-domestic-violence.html>

1994년 워싱턴 주에서는 다른 주 보다 발 빠르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가정 폭력 및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조건은 주 별로 상이하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교정의 정문정책 일환으로 징역형 대신 위치추적 장치를 부과하는 주도 있으며, 일종의 후문정책으로 가석방 조건 하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허민숙, 2021).

〈표 6〉 주 정부 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준

구분	주(州) 정부
전자감독 명령 및 피해자보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워싱턴
명령 위반	아칸소, 코네티컷, 켄터키,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테네시, 위스콘신
보석 및 석방 조건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시시피, 노스 다코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출처: 허민숙(2021), ‘접근금지명령 이행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GPS 위치추적 도입 논의를 위한 시론’에서 재편집

나. 제도 운영실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킹 포함 관계성 범죄 가해자 대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은 주마다 조건이 서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 공통적으로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GPS 수신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가해자가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할

징후가 발견될 시 경보가 울리도록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있다(허민숙, 2021).

제도의 효과성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명령 수단으로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한 구역의 접근을 금지하는 전자장치부착제도는 피해자와 부착자의 물리적인 접촉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rez, Edna, et al., 2012). 2012년 미국 법무부(Departmet of Just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자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정의 정문 정책 일환으로 유죄 선고 이전에 석방 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부과받는 것은 실제 처벌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사법의 비용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IV.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국내 도입시 쟁점⁵⁾

1. 기본권침해 가능성

가. 도입 반대 입장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재판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생활 침해⁶⁾나 무죄추정의 원칙⁷⁾’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그 동안 위치추적

5) 본 내용은 제400회, 403회, 404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주제와 맞게 편집하여 활용하였다.

6)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함

7)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전자장치 부착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 가석방과 같은 구속과 관련해 ‘조건부 석방’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왔다”며 판결 전/구속 전 단계에 스토킹행위만으로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구속심사 과정에 일반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스토킹 외에 보복성 범죄, 원한 범죄에 대한 예방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의 4호 처분인 유치처분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단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시 접근금지와 병과해서 상당한 활용이 예상되고, 부착신청이 폭주할 경우 법원의 입장에서 형 선고 단계도 아니고 구속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를 발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법원에 전가되는 것에 부담이 있음을 피력하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나. 도입 찬성 입장

한편 법무부에서는 이 제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논의가 출발한 ‘조건부 석방제도’와는 전혀 다른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긴급하게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부착여부를 판단하므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 소지는 없음을 반론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조건부 석방제도와 결부해서 논의될 부분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주장은 스토킹범죄는 집착 범죄의 한 유형임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및 행위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확실하게 격리시키고 접근을 막을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법률 제9조 1항의 잠정조치 유형(1. 서면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중 유치장 감치보다 기본권 침해가 낮으며,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극히 적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제한되는 점에서 잠정조치로 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 도입 반대 입장의 재반박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심문절차를 통해 부착명령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혐의단계고,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과 연계된 혹은 구속과 유사한 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하기 전 스토킹 행위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소한 법원에서의 심문 절차를 한 후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부착은 모두 판결선고와 동시에 혹은 구속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심문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심문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소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보다 더 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경우에도 심문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여 유치 처분에 대한 심문절차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도입 찬성 입장의 반론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신변구속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 심문단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것이다. 적어도 법원에서는 심문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객관적 수사 및 혐의 관련 서류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 것이다. 다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심문절차 도입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심문을 위한 피의자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잠정조치

를 위해 가해자를 심문한다면 결국은 잠정조치를 하지 말자는 애기와 똑같다”며 잠정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지 이를 심문 절차로 보완하고자 한다. 면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사라질 것임을 지적하였다.

마. 소결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현행 피해자 보호체계의 빈틈이 부각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행위자의 접근금지명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범죄피해사실이 다수 보도되며(서울경제, 2023) 가해자의 위치추적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톱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스톱킹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수사기관이 스톱킹 행위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김재경, 2022).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일차적으로 경찰의 판단하에 잠정조치·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신청 또는 사후 청구하는데, 추후 행위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행위자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당위성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판례 *Griffin v. Wisconsin*, 483 U.S. 868(1987)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⁸⁾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용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 도출과 합의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용 방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제도의 운용에 관한 논쟁이 있다. 제도의 운용에 관한 논의는 ① 제도의 적용단계, ② 제도 운용 주체, ③ 제도의 실

8) 미 연방대법원은 보호관찰의 목적 하에 필수 불가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보았음

효성 확보방안, ④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진의 의견차이 등이 있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도 존재한다.

가. 제도의 적용단계

먼저 제도의 적용단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긴급 응급조치 단계와 잠정조치 단계 중 어느 단계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 중에서 해당 제도가 긴급응급조치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소병철⁹⁾, 황보승희¹⁰⁾)과 잠정조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김영주¹¹⁾, 박광온¹²⁾, 법무부¹³⁾, 전주혜¹⁴⁾, 정부¹⁵⁾), 그리고 두 단계 모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해야 한다는 의견(김미애¹⁶⁾, 송석준¹⁷⁾, 임호선¹⁸⁾)이 서로 대치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에서 제시한 잠정조치에 한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운용방안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긴급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이유로는 ① 긴급응급조치는 긴급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톱킹행위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선조치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로,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② 긴급응급조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적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은 과도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로 위치추

9)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08. (2022.09.23.)

10)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60. (2022.12.27.)

11)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06. (2022.09.30.)

12)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80. (2022.09.28.)

13) 법무부. (2022.1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법무부 공고 제2022-337호.

14)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64. (2022.06.15.)

15) 정부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039. (2023.02.15.)

16)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40. (2022.10.05.)

17)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97. (2022.09.16.)

18)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66. (2022.09.22.)

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정부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비쳤다.¹⁹⁾

나. 제도 운용 주체

제도 운용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제도 운용의 주체에 관한 의견이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의 집행 담당자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위반 시 벌칙 등의 세부적인 법안 정비 및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관련 의견으로는 정부안, 법무부 입법예고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전주혜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에 따르면 제도 운용의 주체를 보호관찰관으로 제시하였고,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보호직 공무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톱킹 행위자가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스톱킹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접근제한구역에 도달했을 때 수신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용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결정을 받은 스톱킹 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톱킹 행위자가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해당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현장 출동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개정안과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관리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며,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19) 2023.6.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톱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계류중).

대응은 관할 경찰관서에서 맡는다.²⁰⁾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도운용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다. 부착기간 동안은 최소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부착토록 하는 주장이 성립하지만, 반대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인 점에서 그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스톱킹 행위자 대상 적절한 부착기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주로 2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스톱킹 행위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 부착기간을 검토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현행 잠정조치가 2개월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어 현행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개월 이내로 부착하되, 스톱킹행위의 위험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개월 내에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톱킹처벌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로 규정되었다.²¹⁾ 이러한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분석이 없이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관련 합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칙과 동일하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또는 보다 강한 벌칙을 부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잠정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만약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할 경우, 부착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김재경(2022)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동효와 허영희(2022)는 스톱킹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

20) 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77, (2023.6.20.) 계류 중.

21) 법제사법위원회 장,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할 위험이 높으나 현행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톱킹 행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이나, 잠정조치에 포함되는 조치이므로 어떤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벌칙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등 위반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²²⁾

라.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의 이해충돌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자의 이해충돌 역시 제도 운용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장 실무자, 특히 스톱킹 행위자의 관리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청소년계 실무자와 실제 제도 운영에 결정권한을 지닌 경찰지휘부의 의견대립은 원활한 임무 수행의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 마찰은 결정권자와 실무자가 접촉 가능한 정보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는 부착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업무 범위와 수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무자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 격차에 의한 대립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 또한 존재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자의 업무 폭증, 장비 관리 주체, 불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있다. 결정권한자는 현재 잠정조치로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인원이 매우 적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조치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접근금지명령과 병과할 예정인데 현재 접근금지명령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았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역시 그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착장치에 대한 관리 역시 실무자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경찰서에서 진행하

22) 2023.6.21.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스톱킹처벌법 개정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 및 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계류 중).

게 되는데, 다양한 사유로 장비 파손에 대한 수리 및 장치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이 실무자의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는 위치추적센터의 보호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행위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경찰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양 기관 실무자 간의 강한 협력관계 수립과 함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제도운영의 주체를 선정하여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국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담팀(Domestic Abuse Investigation and Safe Guarding Unit; DAISU)의 구성인원처럼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대응인력을 구성하는 것 또한 제도운영의 주체를 선정하는 것과 동등한 입장에 놓고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존재한다. 김영주 의원안에 따르면, 현행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스토킹 행위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에서 더 나아가 행위자가 피해자 근처 1km 이내 등 일정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피해자와 경찰 등 관련자가 즉시 인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피해자 보호의 조치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역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다방면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최초 입법발의된 이래 사회적 합의에 도래하지 못하고 무려 22년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주요한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스톱킹처벌법 상의 잠정조치(특히,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 제도를 검토한 결과, 스톱킹처벌법 상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활용하고 있으나 위반 건수가 적지 않다. 스톱킹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그 위험성에 비하여 제재수단이 미흡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최초 도입시기에 비하여 현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제도인 점에서 스톱킹처벌법 상의 피해자보호 내지 가해자 제재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스톱킹범죄와 같은 가해자-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결과가 예견되는 경우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가운데, 제도도입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없는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 심층적 논의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사법부(법원 행정처)와 행정부(법무부)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의 적용은 경찰이 판단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아닌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잠정조치에 포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 제도운영의 주체는 3원화하여 부착명령은 법원이 하고, 장치의 보관과 부착과 탈착 실행은 경찰에서 하며, 스톱킹 행위자의 위치추적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여부의 감시는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담당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각 기관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상호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의 협력관계 구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과 소방이 소속 인력을 상대 기관에 파견함으로써 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일선 경찰(경찰서 여청수사팀 및 지역경찰)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사이의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상호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 강화를 꾀하는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용에 전담경찰관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정원감축마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보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기존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업무에 스토킹 관련 업무가 추가되는 형태는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실질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조직개선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그 효용성만큼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형사정책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합리적 운용이 요구된다. 즉, 위치추적장치 부착기간은 최대 2개월 이내로 하되 최대 2회 연장 가능한 수준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훼손이나 임의 분리 등 위반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시의 벌칙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법의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경우 그러한 차이가 규정 위반의 고려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도의 실증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쌍방향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직 하다.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내지 학원 등 특정 공간을 접근금지 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해당 공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즉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하지는 취지에서는 피해자 자체가 접근금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기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가 상호 연동되어 특정 간격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험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서구 유럽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연구는 스톱킹 처벌법 시행 이후 여전히 사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 보호 내지 스톱킹 행위자 제재 수준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았다.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도입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 및 제도운영 상의 여러 쟁점들이 도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바람직한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제도도입 이후 그 효과성 검증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22). 스톱킹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고시면. (2022). (2022년 9월 14일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에 이른 스톱킹’ 등의 사례들에서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약 1년 만에 유명무실화 논란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스토킹 2], 사법행정, 63(12), 2-23.

곽영길, 임유석, 송상욱. (2011). 스톱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3), 47-76.

김광현. (2022).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김미애 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740 (2022.10.05.).

김연수, 이재영. (2020).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수용모델 적용, 한국경찰학회보, 22(6), 113-144.

김영주 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706 (2022.09.30.).

김재경. (2022). 스톱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17), 181-198.

김혜영. (2021). 스톱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톱킹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Ewha Law Review 11., 141-161.

문화체육관광부. (2022). 스톱킹범죄자 전자감독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박광온 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80 (2022.09.28.).

박찬걸. (2021). 최근 제정된 스톱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구, 33(3),

267-290.

법무부. (2022.1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법무부 공고 제2022-337호.

법무부 누리집. 전자감독제도,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최종검색
일: 2023.05.3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2.10.26.).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2.20.). 제403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3.22.). 제40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_____.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77
(2023.6.20.).

서울경제. (2023.02.24.). 경찰이 스마트워치 쫓지만 또 납치...피해자 보호 효과 있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VI2XJK8>(최종검색일: 2023.05.30.).

소병철 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08,
(2022.09.23.).

송석준 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397
(2022.09.16.).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23.5.6.).

임호선 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466
(2022.09.22.).

전주혜 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964
(2022.06.15.).

정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039 (2023.02.15.).

조운오. (2022). 전자감독 처분 유형별 차별화 전략 연구(단기구금형 대체 전자감독 도
입에 관한 연구 중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톱킹 신고에 대한 조치, <https://easylaw.go.kr/CSP/CnpCls>

Main.laf?popMenu=ov&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
(최종검색일: 2023.05.31.).

한동효, 허영희. (2022).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30(1), 225-256.

한민경. (2022).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의 현황과 한계-잠정조치 불이행을 중심으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 (최종검색일: 2023.05.29.).

허민숙(2022), 접근금지명령 이행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GPS 위치추적 도입 논의를 위한 시론.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160 (2022.12.27.).

Hertfordshire Constabulary. (2021). DAISU Unit
https://tri-force.tal.net/vx/mobile-0/appcentre-herts_ext/brand-5/candidate/so/pm/6/pl/20/opp/9912-PS-1284-H-A4-DAISU-Domestic-Abuse-Investigation-and-Safeguarding-Unit-Officer-Safeguarding/en-GB

Queensland Police Station. (2023). 가정폭력 대응방법
<https://www.police.qld.gov.au/domestic-violence/do-you-use-domestic-violence>

Queensland Police Station. (2023). QPS 관련 내용.
<https://www.police.qld.gov.au/domestic-violence/do-you-use-domestic-violence> Website Police Station.

QPS Website Police Station. (2023). QPS Watch House
<https://www.police.qld.gov.au/initiatives/electronic-monitoring-gps-tracking-of-bailees/about-electronic-monitoring>

A Study on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s for Tracking the Stalker Location

Kim, Namgyu* · Park, Dayoon** · Noh, Heejoo***

Kim, Dosun**** · Kim, Yeonsoo*****

The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a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to protect victims and strengthen sanctions on perpetrators, which are pointed out as deficiencies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in October 2021.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ently revised legislation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additional consider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during the review of overseas legislation and domestic legislation.

First,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it should be included in temporary measures that require judgment by judges. Second, the subject of the system operation is three won, and the attachment order is carried out by the court, the device management and attachment are carried out by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location of the attachment.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institutions, human exchanges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rs are proposed. Third, the attachment period is up to two months, but it can be extended up to two times, but in the same way as penalties imposed on other provisional measures in the event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Master Candidat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Professor,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ecurity in Dongguk University(Seoul)

of a viol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is considered reasonable. Finally, a reflux system for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ystem is proposed through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a two-way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 Key words: stalking crim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victim protection, basic rights,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형사정책연구 가을호 논문투고 안내

형사정책연구 '가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접수 마감일은 2023년 8월 31일(목)까지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내용

- 제목(한글 및 외국어)
- 성명, 소속 및 직위(한글 및 외국어)
 -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
- 초록(한글 및 외국어)
-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
- 본문(항목번호는 I,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제목위, 아래 한행씩 띄어준다)
 - ※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고 번역문인 경우 원문 별도 첨부
 - 외국어는 단일언어 표기시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번역본을 첨부
- 참고문헌(국내, 구미, 일본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구미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연도 순으로 구성)
- 각주(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
- 제목, 성명, 소속 및 직위, 초록 주제어의 외국어 작성시, 반드시 영문을 포함하여 작성

2. 원고작성

-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 글자모양 및 크기 : 신명조체 11포인트(각주는 10포인트)
- 줄 간격 : 180%
- 분량 : A4 20매 내외(최대 25매 초과 불가)
- 작성 : 한글 프로그램 사용

3. 투고자격 및 심사

- 원고 투고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경력자로 한다.
- 제출된 원고는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4. 원고접수 마감 및 제출처

- 원고접수 마감일 : 2023년 8월 31일(목)
- 제출처 : <https://kic.jams.or.kr>
- 전 화 : (02) 3460-9247
 - ※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명, 소속 등 신상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고,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
 - ※ 논문투고 시 발생하는 심사료 및 게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서 부담합니다.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IM AND SC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a biannual and peer-reviewed English journal publish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facilitates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idence-based research on crime trends in order to make a contribution to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The IJCJ will share academic and practical views from home and abroad and play a pivotal role as an international academic arena for criminal justice policies.

SUBMISSION DETAILS

-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nd should be no more than 10,000 words in MS word.
- Please provide an abstract which should be no more than 200 words in length and a maximum of 5 key words.
- All papers should identify all authors and provide their contact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full postal addresses, email addresses, affiliations and so on.
-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y have written entirely original works, and should not publish manuscripts describing essentially the same research in more than one journal.
- Honorarium (USD 2,000 or KRW 2,000,000) will be paid when paper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 All manuscripts must be submitted to the managing editor Ms. Hyewon KWON at ijcj@kicj.re.kr

AR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invites paper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y issues related to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will be welcomed such as:

Community Sanction, Corrections, Corruption & White Collar Crime, Crime Prevention & Protection, Crime Trends, Crime & Deviance,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Law & Policy, Criminal Procedure, Cybercrime, Drug, Terrorism & Organized Crime, Economic & Corporate Crime, Information, Technology & Forensic Scienc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Penology, Police & Policing, Violent Crime.

간행물출판위원회

위원장 : 홍 영 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위 원 : 김 한 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 혜 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 성 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문 준 섭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해양경찰학전공 교수)

유 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 현 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탁 희 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홍 승 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 지 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가나다 순)

간 사 : 장 종 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 책임행정원)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34호, 2023·여름호)

발행인 : 하 태 훈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3460-9247

등 록 : 1990년 4월 3일 바-1360

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인 쇄 : 고려씨엔피
전화 (02)2277-1508

본 학술지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함

[정가 : 10,000원]

